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616-10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2019.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성평등  
가족부



여성가족부





# 차례 Contents

## 제1장 개 요 • 1

1. 목 적 ..... 3
2. 연 혁 ..... 3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 6
4.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 8

## 제2장 예방교육 실시 및 후속조치 • 9

1. 예방교육 실시 ..... 11
2. 후속 조치 ..... 12

## 제3장 기관 협조사항 • 15

1. 상급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관리·감독 강화 ..... 17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 ..... 18
3. 주무기관의 소속·산하기관 관리 철저 ..... 18
4.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 활용 ..... 19
5. 교육 콘텐츠 추천 및 활용 ..... 19
6.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으로 부실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20
7. 폭력 예방교육 시 불법촬영 등 신종범죄에 관한 내용 포함 ..... 20
8. 신규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 20
9. 일반 국민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홍보 ..... 21
10.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에 따른 협조 ..... 21

## 제4장 2019년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 23

1. 2019년 지침 개정 방향 ..... 25
2. 2019년 지침 주요 변경사항 ..... 25



## 제5장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및 이행사항 • 27

1. 목 적 ..... 29
2.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 29
3. 예방교육 세부 이행사항 ..... 34

## 제6장 통합교육 실시방법 및 내용 • 51

1. 개 요 ..... 53
2. 세부 실시방법 ..... 54

## 제7장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안내 • 57

1. 주의사항 ..... 59
2. 추진실적 입력방법 ..... 59
3. 전문강사 및 교육자료 찾기 ..... 65
4.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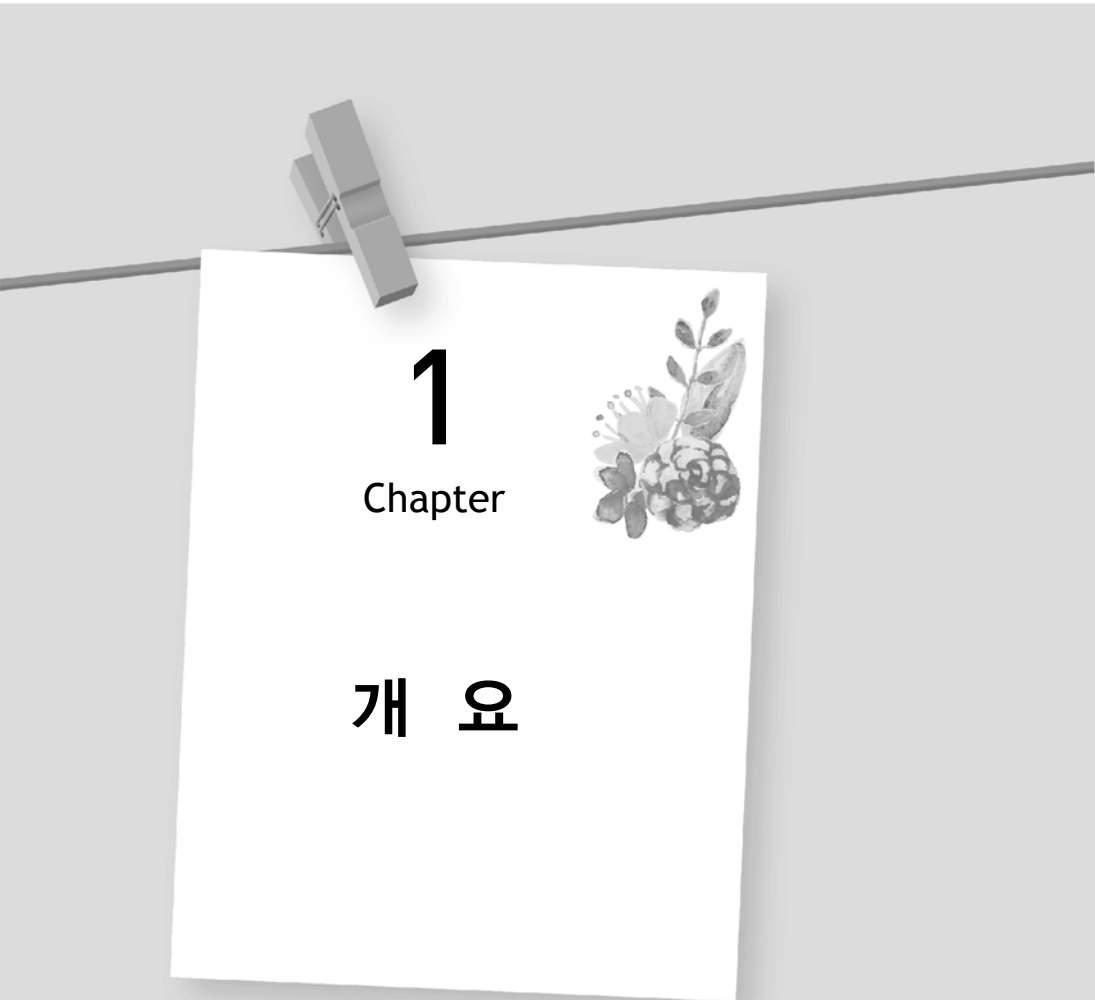
## 제8장 참고자료 • 67

- 붙임 1 폭력 예방교육 운영 관련 주요 FAQ / 69
- 붙임 2 통합교육 계획서(서식) / 83
- 붙임 3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 84
- 붙임 4 성폭력 예방 지침 표준안 및 해설(유치원·어린이집용) / 99
- 붙임 5 성폭력 예방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 101
- 붙임 6 소속·산하기관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서식) / 103
- 붙임 7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 104
- 붙임 8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 / 108
- 붙임 9 교육만족도 조사(예시) / 123
- 붙임 10 교육만족도 및 효과 / 124
- 붙임 11 교육 효과 조사(교육 전/후) / 125
- 붙임 12 예방교육 개선의견 조사 / 126
- 붙임 13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계획 및 결과(서식) / 127
- 붙임 14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추천 콘텐츠 현황 / 128









# 1

Chapter



## 개 요

1. 목 적
2. 연 혁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4.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 1 목 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 교육 목표
  - 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사회 조성

## 2 연 혁

-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정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 2003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
  -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대상기관 범위 확대 및 실적제출 의무화
- 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초·중·고교의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화
- 2005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성희롱 방지조치 근거조항이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변경
-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성희롱 방지 부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 강화
- 2008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확대
  -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 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행 '11.1.1)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2012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3.6.19)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실적 제출 의무화
- 2013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1.31)
  - 가정폭력 예방교육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
-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시행 '14.2.14)
  -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7.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9.28)
-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시행 '14.7.1)
  - 관련자 징계 등 요구(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 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
  - 평가 반영요구(「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2014년 1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4.7.22)
  - 성희롱(여성발전기본법)과 같게, 점검, 언론 등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관련자 징계 등 요구, 평가 반영요구

\* 같은 내용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4.9.28)

-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14.5.28. 공포)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  
(시행 '15.7.1.)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2015년 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5.2.3.)
  - 민간 사업장,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노력 의무 신설
- 2015년 6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시행 '15.12.23.)
  - 기관평가 반영 요구 대상(「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확대
- 2015년 12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6.6.2.)
  -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의무 추가
- 2016년 5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  
(시행 '16.11.30.)
  -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 2018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개정(시행 '19.6.19.)
  -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구체화 및 국가기관 등의 장이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 확대
  -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 구 분      |       | 성희롱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 교육 실시 주체 |       | - 국가기관등 <sup>1)</sup> 의 장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br>-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sup>2)</sup> 의 장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br>-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sup>2)</sup> 의 장<br>-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br>-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sup>2)</sup> 의 장 |
| 도입       | 시기    | 1999년<br>※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2004년                                                                    | 2010년('11.1월 시행)                                                                           | 2006년                                                                    |
|          | 대상 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 초·중·고교                                                                   | 초·중·고교                                                                                     | 초·중·고교                                                                   |
| 확대       | 시기    | 2003년<br>※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2008년                                                                    | 2011년, 2012년('13.6월 시행)                                                                    | 2014년(1.31일 시행)                                                          |
|          | 대상 기관 | 공공단체 <sup>2)</sup> 확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 - 2011년 :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11.10월 시행)<br>- 2012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13.6월 시행)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
| 현행 근거법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 구 분     |    | 성희롱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 교육 대상   | 필수 | -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br>※ 시행령에 명문화                    |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br>- 중·고등학생<br>※ 시행령에 명문화                 |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br>- 학생 등<br>※ 시행령에 명문화 |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br>- 학생 등<br>※ 시행령에 명문화 |
|         |    | 기관장                                              | 기관장                                                            | 기관장                                          | 기관장                                          |
|         |    | 고위직                                              | 고위직                                                            | 고위직                                          | 고위직                                          |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         |    |                                                  |                                                                | 학생, 보육아동, 원생                                 | 학생                                           |
|         | 선택 |                                                  | 학부모                                                            | 학부모                                          | 학부모                                          |
| 교육횟수    |    | 연 1회, 1시간 이상<br>※ 시행령에 명문화                       | 연 1회, 1시간 이상<br>※ 시행령에 명문화                                     | 연 1회, 1시간 이상<br>※ 시행령에 명문화                   | 연 1회, 1시간 이상<br>※ 시행령에 명문화                   |
| 교육목적    |    |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br>-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br>-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
| 교육실적 보고 |    |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각급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2)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4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각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성폭력 예방교육만 해당됨)

|                          |                                                                                                             |                 |
|--------------------------|-------------------------------------------------------------------------------------------------------------|-----------------|
| 「유아교육법」에 의해<br>설치된 유치원   |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성폭력예방<br>교육만 해당 |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br>설치된 어린이집 |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br>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br>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성폭력예방<br>교육만 해당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br>설치된 학교  | ▶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br>▶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br>▶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                 |
| 「고등교육법」에 의해<br>설치된 학교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br>▶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br>▶ 각종학교                                                   |                 |
| 다른 법률에 의해<br>설치된 학교      |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br>대학, 경찰대학, 국방대학교, 간호사관학교, 공군사관<br>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br>한국폴리텍학교 등 |                 |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

※ 인사혁신처 고시(제2018-8호, 2018년 하반기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 참조(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



# 2

Chapter



## 예방교육 실시 및 후속조치

1. 예방교육 실시
2. 후속 조치





## 1 예방교육 실시

- (교육시간 및 분야)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성희롱방지조치·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통합교육 내용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비롯, 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트 폭력, 온라인 폭력 등 신종 성폭력을 포함 가능
  - 통합교육 시간은 동일(연간 공공기관 종사자 4시간 이상, 중·고생 3시간 이상 등)
- (교육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
  -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
  - \*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
- (교육기간) 2019. 1. 1. ~ 12. 31.
- (교육방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한 전문강사, 일반강사,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내부직원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기관 특성에 맞게 실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소규모 집합교육 권장
  - \* 교육시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5장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및 이행사항」 참조
- (실적제출) 2020년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을 통해 제출
- (공개) 일반국민 누구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예방교육 추진사항을 조회할 수 있음.
  - 공개항목 : (교육별)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여부, 기관장 교육참여 여부, 고위직 참여율, 직원 참여율,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 교육 방법 등
  - 공개시기 : 2019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보고(국무회의) 및 언론 공표와 동시에 진행(7월~10월경)

## 2 후속 조치

### □ 부진기관 관리

-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실시, 예방교육 이행계획서를 제출
- 공공기관이 실적 미제출 및 허위 제출한 경우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인 경우에는 주무부처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주무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부진기관 기준

| 구분                | 세부 기준                                                                  |
|-------------------|------------------------------------------------------------------------|
|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br>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br>③ 기관장 교육미이수<br>④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
| 각급학교(초·중·고)       |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br>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br>③ 기관장 교육미이수<br>④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
| 대학                |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br>② 기관장 교육미이수<br>③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
| 유치원, 어린이집         |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br>② 원장 교육미이수                                        |

-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이행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진기관으로 분류(유치원, 어린이집 제외)
  - ①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 ② 고충상담창구 설치, ③ 성희롱 예방지침 제(개)정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부진기관 기준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각에 적용됨

### □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 일정 : 2019년 6~8월(예정)
- 교육참가 대상자
  -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 폭력예방업무 담당부서 과장급 이상
  - 공직유관단체 : 인사 또는 복무 관련 부서의 장
  - 초·중·고등학교 : 교감 또는 교무부장
  - 대학교 : 사무처장 또는 교무처장 이상
  - 유치원·어린이집 : 원장 또는 원감 등

### □ 언론공표

- 2년 연속 부진기관(1개 분야의 교육이라도 2년 연속 부진기관인 경우 포함)
-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에 불참하는 기관
- 기관장이 예방교육을 미이수한 기관, 고위직참여율 70% 미만인 기관  
(※ 관리자 특별교육 참여 기관 등은 제외)

#### ※ 성폭력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 우수기관 시상

- 우수기관 및 유공단체, 개인(업무담당자 등) :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및 포상금
  - \* 2018년 시상 현황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 우수기관” 에서 확인 가능

○ 선정방법

- 1차 : 교육 합계 점수 상위기관에 대해 우수사례 접수(8월~9월)
- 2차 : 서면평가(제출된 우수사례 심사)(9월~10월)
- 3차 : 현지실사 및 최종심사(2배수기관)

○ 포상시기 : 2019. 11월 중

# 3

## Chapter



### 기관 협조사항

1. 상급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관리·감독 강화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
3. 주무기관의 소속·산하기관 관리 철저
4.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 활용
5. 교육 콘텐츠 추천 및 활용
6.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으로 부실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7. 폭력 예방교육 시 불법촬영 등 신종범죄에 관한 내용 포함
8. 신규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9. 일반 국민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홍보
10.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에 따른 협조



## 1 상급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관리·감독 강화

-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 확대(양성평등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19.6.19.)
  - (기존) 여성가족부 장관 → (개정)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
-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처·청'의 관리·감독 강화('18년 이후 계속)
  -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급 고위직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건 처리 지휘·감독
  - 공공기관 내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사건처리결과 포함)을 여성가족부 및 '주무 부·처·청, 지방자치단체'에 동시 제출 의무화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저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로 제출
    -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상급 주무부·처·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
  -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사건 조치결과 보고서 및 재발방지 대책은 감독기관을 경유하여 여성가족부 점검관리팀과 권익지원과에 공문 동시 제출
- 교육청 단위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설치·운영(~'19.상, 교육부)
  -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가해, 피해사실 언론 공개 사안 등 중대·심각한 사안의 처리를 위해 교육청 단위 '교직원·학생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당 사안 처리를 의무화

##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

- 고충상담원은 3년 이내(2017~2019년)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포함하여 지정·운영(필수항목)
  -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점검 기준표가 강화됨에 따라 2019년 실적에 기관 내 고충상담원 중 3년 이내(2017~2019년)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는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예정
    - ※ 고충상담원 교육과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심화과정도 포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의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연수, 우정공무원 교육원 등 자체개설 교육과정
  - 담당자가 수시 교체되지 않도록 장기 근속자 등 정규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 고충상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 연간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예산을 반영하여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고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3 주무기관의 소속·산하기관 관리 철저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폭력 예방조치 이행, 폭력 예방교육 등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본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 요청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성폭력 예방계획에 소속·산하기관 관리 사항 반영. 특히 체육 관련 단체를 운영, 감독하는 기관은 선수 및 지도자도 교육 대상으로 포함 권장
    -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성폭력 예방계획 의무화
  - 소속기관(산하단체)으로부터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등에 의한 교육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아 지침 이행 독려
    - ※ 상급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소속기관 실적관리' 메뉴를 통해 소속기관 현황(평가점수, 항목별 추진실적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4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 활용

-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위해 대면교육 뿐 아니라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법도 적극 활용
  - 대면교육을 권장하지만 기관 내 여건이나 환경 등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교육 실시 가능
  - 예방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고 전달효과가 높다면 뮤지컬, 연극, 토론, 영화, 세미나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교육 시행 가능
    - ※ 토론, 세미나, 연극(인형극 포함), 뮤지컬 등 성인지력(폭력민감성) 제고 및 폭력예방 관련 공연에 의한 교육방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일반강사와 동일한 교육방법으로 인정하고 가점 5점 부여
- 폭력예방교육은 주입 위주의 교육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더 효과적임
  - 교수, 실·국장급 등의 고위직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에 대한 토론 및 세미나 등을 통한 교육 권장
  - 직급별로 추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가점 8점 부여

#### 5 교육 콘텐츠 추천 및 활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를 통해 제공
  -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타 부처, 민간기관에서 직접 제작 또는 활용중인 우수 교재·프로그램
- 우수 교재·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점 2점 부여
  - ※ 폭력예방교육 추천 콘텐츠 현황 : 총 372종('18.12월 기준)
- 각 기관에서 직접 제작 또는 활용중인 우수 교재·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적극 발굴

## 6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으로 부실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금융 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한 무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제도 취지를 훼손하거나 교육내용의 부실 우려가 높음(각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에 기초한 교육인 만큼 내실 있는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차원의 관심과 노력 요청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18년 신설)

## 7 폭력 예방교육 시 불법촬영 등 신종범죄에 관한 내용 포함

- 성폭력 예방교육 시 불법촬영행위 및 불법영상물 유포행위의 위험성,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공공부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 8 신규자 교육과정 등에 예방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 신규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 효율을 위해 연수원, 교육청 등의 '신규직원 O·T' 커리큘럼에 관련 교과목 개설 권고
- 각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에게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인식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교육구성

- 자체 제작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추천 콘텐츠’ 활용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http://www.mogef.go.kr)) 내 교육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9 일반 국민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홍보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일반 국민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는 관련 사항 홍보 협조
- 전국 17개 시·도(18개 권역)별 ‘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연 5,150회 실시 예정)
  -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전화 : 1661-6005
  - ※ 교육일 14일 전까지 시·도별 교육지원기관에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shp.mogef.go.kr](http://shp.mogef.go.kr))
- 민간 사업장의 사용자에게도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 의무가 신설된 만큼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
  - ※ 성폭력방지법 제5조 제3항 개정(15.2.3)

## 10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에 따른 협조

- 체육계 관련 기관,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과 점검결과에 기반한 향후 폭력예방교육의 보완·개선 방안 컨설팅 실시(폭력예방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가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
- 예방교육 계획 수립 여부, 종사자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성희롱 방지조치(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원 지정) 등
- 대상기관 폭력예방교육 방향 설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개선안 권고 등
  - ※ 2015년부터 매년 500개 내외의 기관을 선정,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 4

Chapter



## 2019년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1. 2019년 지침 개정 방향
2. 2019년 지침 주요 변경사항



## 1 2019년 지침 개정 방향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미투대책 등 반영
-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장 및 고위직의 교육 관리 강화
- 부진기관 기준 및 후속조치 강화로 실적점검 실효성 제고

## 2 2019년 지침 주요 변경사항

###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 개정 前                                                    | 개정 後                                                                                                     |
|----------------------------------------|---------------------------------------------------------|----------------------------------------------------------------------------------------------------------|
| 기관장 및 고위직<br>교육참여율 제고                  | (부진기관)<br>기관장 교육 미이수<br>고위직 참여율 50%미만                   | (부진기관)<br>기관장 교육 미이수<br>고위직 참여율 70%미만<br>(+)<br>주무부처 통보                                                  |
| 관리자 대상<br>맞춤형 교육 별도 실시<br>(미투 보완대책 관련) | (신설)                                                    | (‘19년) 구분교육시 가점부여 확대<br>(‘20년) 전체 교육인원 200인 이상<br>(‘21년~) 전체 교육인원 100인 이상                                |
| 고위직(교수 포함)<br>예방교육 참여율 배점 상향           | 10점(일반용)<br>10점(학생 포함용)                                 | 25점(일반용)<br>15점(학생 포함용)                                                                                  |
| 부진기준 최저 교육 참여율<br>강화                   | 고위직 50% 미만,<br>직원 이수율 70% 미만<br>(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br>단체) | 고위직 70% 미만,<br>직원 이수율 70% 미만<br>(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br>초·중·고)<br>* 초·중·고 및 대학교 학생 : 50%미만<br>(‘20년부터 적용) |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br>(필수) 및 ‘사이버신고센터’<br>추가설치(권고)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필수) 및<br>‘사이버신고센터’ 추가설치(필수)                                                                |
| 통합교육의 내실화<br>(미투 보완대책 관련)              | (신설)                                                    | 통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br>연 2회 이상 교육 실시 의무화                                                                     |
| 허위 실적 보고서<br>제재 강화<br>(스쿨미투 대책 관련)     | 주무부처에 사실 통보, 주무<br>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점검’<br>실시                | 주무부처에 사실 통보, 주무부처와<br>협조하여 ‘현장점검’ 실시, 부진기관<br>지정                                                         |

| 구 분                                               | 개정 前 | 개정 後                                                      |
|---------------------------------------------------|------|-----------------------------------------------------------|
| 교육 수료자 대상<br>교육효과성 측정<br>(‘18년 국회 여가위 결산<br>지적사항) | (신설) | 교육 실시 후 교육만족도 및 건의사항<br>등을 결과보고서에 포함(권장)                  |
| 체육계 미투 관련                                         | (신설) | 체육계 관련 단체 현장점검 및 컨설팅<br>실시 안내, 선수 및 지도자까지 교육을<br>실시하도록 권장 |

#### □ 부진기관 기준

| 구 분                  | 개정 前                                                                   | 개정 後                                                                   |
|----------------------|------------------------------------------------------------------------|------------------------------------------------------------------------|
| 국가기관, 지자체,<br>공직유관단체 |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br>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br>③ 기관장 교육미이수<br>④ 고위직참여율 50% 미만 |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br>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br>③ 기관장 교육미이수<br>④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
| 각급학교(초·중·고)          |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br>(신설)<br>② 기관장 교육미이수<br>③ 고위직참여율 50% 미만            |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br>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br>③ 기관장 교육미이수<br>④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
| 대학                   |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br>② 기관장 교육미이수<br>③ 고위직참여율 50% 미만                    |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br>② 기관장 교육미이수<br>③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
| 유치원, 어린이집            |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br>② 원장 교육미이수                                        |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br>② 원장 교육미이수                                        |

○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이행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진기관으로 분류(유치원, 어린이집 제외)

①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 ② 고충상담창구 설치, ③ 성희롱 예방 지침 제(개)정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부진기관 기준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각에 적용됨





# 5

Chapter



##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및 이행사항

1. 목 적
2.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3. 예방교육 세부 이행사항



## 1 목 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2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 기관 유형별 적용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 특히, 학교의 경우 폭력 예방교육 분야별 교육대상이 상이한 바(학생포함 여부), 아래 표를 참고하여 각 교육 분야에 맞는 실적 점검 기준표 적용
  - 유치원·어린이집은 성폭력 예방교육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으로, 〈실적 점검 기준표(C)-유치원, 어린이집용〉을 적용

| 기관 유형                    |        | 〈실적 점검 기준표 (A)<br>- 일반용〉 | 〈실적 점검 기준표 (B)<br>- 학생 포함용〉 | 〈실적 점검 기준표 (C)<br>- 유치원, 어린이집용〉 |
|--------------------------|--------|--------------------------|-----------------------------|---------------------------------|
| 국가기관<br>지방자치단체<br>공직유관단체 |        | 성희롱*·성매매·<br>성폭력·가정폭력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학교                       | 초등학교   | 성희롱*·성매매                 | 성폭력·가정폭력                    | (해당 없음)                         |
|                          | 중·고등학교 | 성희롱*                     | 성폭력·성매매<br>·가정폭력            | (해당 없음)                         |
|                          | 대학교    | 성희롱*·성매매                 | 성폭력·가정폭력                    | (해당 없음)                         |
| 유치원, 어린이집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성폭력                             |

※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기관은 〈실적 점검 기준표(A-1) - 성희롱 방지조치〉에 따라 추가로 해당 실적 점검

## □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 〈실적 점검 기준표 (A) - 일반용〉

| 유형               | 평가항목                                        |               | 2019년                    |                                                   |
|------------------|---------------------------------------------|---------------|--------------------------|---------------------------------------------------|
|                  |                                             |               | 배점                       | 세부내용                                              |
| 계획<br>수립<br>(10) | 폭력 예방교육 연간<br>기본계획(10)<br>(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               | 10                       | 기본계획 수립 (10)                                      |
|                  |                                             |               |                          | 기본계획 미수립 (0)                                      |
| 교육<br>실시<br>(90) | 교육참여<br>(70)                                | 기관장           | 10                       | 이수 * (고위직이 없는 경우 35점) (10)                        |
|                  |                                             |               |                          | 미이수 * 부진기관 (0)                                    |
|                  |                                             | 고위직           | 25                       | 90% 이상 (25)                                       |
|                  |                                             |               |                          | 70~90% 미만 (15)                                    |
|                  |                                             |               |                          | 50~70% 미만 * 부진기관 (5)                              |
|                  |                                             |               |                          | 50% 미만 (0)                                        |
|                  |                                             | 직원            | 30                       | 90% 이상 (30)                                       |
|                  |                                             |               |                          | 80~90% 미만 (25)                                    |
|                  |                                             |               |                          | 70~80% 미만 (20)                                    |
|                  |                                             |               |                          | 60~70% 미만 * 부진기관 (15)                             |
|                  |                                             |               |                          | 50~60% 미만 (10)                                    |
|                  |                                             |               |                          | 50% 미만 (0)                                        |
|                  |                                             | 신규자 및<br>비정규직 | 5<br>(신규자 3 +<br>비정규직 2) |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br>*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
|                  |                                             |               |                          | 70% 미만 (0)                                        |
|                  | 교육방법(20)                                    |               | 20                       | 전문강사 교육 (20)                                      |
|                  |                                             |               |                          | 일반강사** 교육 (15)                                    |
|                  |                                             |               |                          | 내부직원 교육 (10)                                      |
|                  |                                             |               |                          | 사이버 교육 (8)                                        |
|                  |                                             |               |                          |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
| 가점<br>(20)       |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               | 5                        |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5)                           |
|                  |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br>자체교육자료 제작                   |               | 2                        | 사용 (2)                                            |
|                  |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br>의무화 제도 마련                |               | 5                        |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
|                  | 직급별 별도 추가교육 실시                              |               | 8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8)                                    |
| 합계               | 합계                                          |               | 100점(가점 시 120점)          |                                                   |

※ 부진기관 기준 :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초·중·고)) : 합계 70점 미만, 직원이수율 70%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대학교) :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실적 점검 기준표 (A-1) - 성희롱 방지조치〉

※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적용 대상

| 평가항목                           | 시행 여부 | 비 고                                                                                                                                                                                                                                                                                                                                                                                                                                |
|--------------------------------|-------|------------------------------------------------------------------------------------------------------------------------------------------------------------------------------------------------------------------------------------------------------------------------------------------------------------------------------------------------------------------------------------------------------------------------------------|
| 고충 담당자(상담원) 지정<br>및 전문·심화교육 이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인 이상(남, 녀 각 1인 이상 지정)</li> <li>※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li> <li>※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명 이상 지정 가능</li> <li>- ('19년)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시 해당 항목 인정</li> <li>* 가급적 기관 고충상담원 1/2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권장</li> <li>*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17~'19년 교육 이수)를 이수자로 인정</li> <li>※ 고충상담원 심화교육 이수 포함</li> <li>- ('20년~) 기관 고충상담원 신규지정시 3개월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시 해당 항목 인정</li> </ul> |
| 고충 상담창구 설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된 공간의 상담 창구 설치 권장</li> <li>※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제외</li> <li>-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포함 의무화</li> <li>※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제외</li> </ul>                                                                                                                                                                                                                                                      |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사항 모두 반영 시 인정</li> </ul>                                                                                                                                                                                                                                                                                                                                           |

※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창구, 상담원, 지침) 중 하나라도 미이행한 기관

## □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 〈실적 점검 기준표 (B)-학생 포함용〉

| 유형               | 평가항목                                              |                          | 2019년                                             |                        |    |                |
|------------------|---------------------------------------------------|--------------------------|---------------------------------------------------|------------------------|----|----------------|
|                  |                                                   |                          | 배점                                                | 세부내용                   |    |                |
| 계획<br>수립<br>(10) | 폭력 예방교육<br>연간 기본계획(10)                            |                          | 10                                                | 수립 (10)                |    |                |
|                  |                                                   |                          |                                                   | 미수립 (0)                |    |                |
| 교육<br>실시<br>(90) | 교육참여(70)                                          | 기관장                      | 10                                                | 이수 (10)                |    |                |
|                  |                                                   |                          |                                                   | 미이수 * 부진기관 (0)         |    |                |
|                  |                                                   | 고위직                      | 15                                                | 90% 이상 (15)            |    |                |
|                  |                                                   |                          |                                                   | 70~90% 미만 (10)         |    |                |
|                  |                                                   |                          |                                                   | 50~70% 미만 * 부진기관 (5)   |    |                |
|                  |                                                   |                          |                                                   | 50% 미만 (0)             |    |                |
|                  |                                                   |                          |                                                   | 직원                     | 20 | 90% 이상 (20)    |
|                  |                                                   |                          |                                                   |                        |    | 80~90% 미만 (17) |
|                  |                                                   | 70~80% 미만 (14)           |                                                   |                        |    |                |
|                  |                                                   | 60~70% 미만 * 부진기관 (11)    |                                                   |                        |    |                |
|                  |                                                   | 50~60% 미만 (8)            |                                                   |                        |    |                |
|                  |                                                   | 50% 미만 (5)               |                                                   |                        |    |                |
|                  |                                                   | 학생                       | 20                                                | 90% 이상 (20)            |    |                |
|                  |                                                   |                          |                                                   | 80~90% 미만 (17)         |    |                |
|                  |                                                   |                          |                                                   | 70~80% 미만 (14)         |    |                |
|                  |                                                   |                          |                                                   | 60~70% 미만 (11)         |    |                |
|                  |                                                   |                          |                                                   | 50~60% 미만 (8)          |    |                |
|                  |                                                   |                          |                                                   | 50% 미만 (5)             |    |                |
|                  | 신규자 및<br>비정규직                                     | 5<br>(신규자 3 +<br>비정규직 2) |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br>*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                        |    |                |
|                  |                                                   |                          | 70% 미만 (0)                                        |                        |    |                |
| 교육방법(20)         |                                                   | 20                       | 전문강사 교육 (20)                                      |                        |    |                |
|                  |                                                   |                          | 일반강사** 교육 (15)                                    |                        |    |                |
|                  |                                                   |                          | 내부직원 교육 (10)                                      |                        |    |                |
|                  |                                                   |                          | 사이버 교육 (8)                                        |                        |    |                |
|                  |                                                   |                          |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                        |    |                |
| 가점<br>(20)       |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                          | 5                                                 |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5) |    |                |
|                  |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br>자체교육자료 제작                         |                          | 2                                                 | 사용 (2)                 |    |                |
|                  |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br>의무화 제도 마련                      |                          | 3                                                 |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3)     |    |                |
|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br>학생회 등 학교자치기구를<br>통한 예방교육모니터링 실시 |                          | 2                                                 |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2)       |    |                |
|                  | 직급별 별도 추가교육 실시                                    |                          | 8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8)         |    |                |
| 합계               | 합계                                                |                          |                                                   | 100점 (가점 시 120점)       |    |                |

※ 부진기관 기준

(각급학교(초·중·고)): 합계 70점 미만, 직원이수율 70%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대학교):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 〈실적 점검 기준표 (C)-유치원, 어린이집용〉

| 유형               | 평가항목                   |                           | 2019년                    |                                                   |
|------------------|------------------------|---------------------------|--------------------------|---------------------------------------------------|
|                  |                        |                           | 배점                       | 세부내용                                              |
| 계획<br>수립<br>(10) | 폭력 예방교육<br>연간 기본계획(10) |                           | 10                       | 수립 (10)                                           |
|                  |                        |                           |                          | 미수립 (0)                                           |
| 교육<br>실시<br>(90) | 교육참여(70)               | 기관장<br>(원장)               | 10                       | 이수 (10)                                           |
|                  |                        |                           |                          | 미이수 * 부진기관 (0)                                    |
|                  |                        | 직원                        | 30                       | 90% 이상 (30/55*)<br>*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
|                  |                        |                           |                          | 80~90% 미만 (27/49*)                                |
|                  |                        |                           |                          | 70~80% 미만 (24/43*)                                |
|                  |                        |                           |                          | 60~70% 미만 (21/37*)                                |
|                  |                        |                           |                          | 50~60% 미만 (18/31*)                                |
|                  |                        |                           |                          | 50% 미만 (15/25*)                                   |
|                  |                        |                           |                          | 학생<br>(원생)                                        |
|                  |                        | 80~90% 미만 (22)            |                          |                                                   |
|                  |                        | 70~80% 미만 (19)            |                          |                                                   |
|                  |                        | 60~70% 미만 (16)            |                          |                                                   |
|                  |                        | 50~60% 미만 (13)            |                          |                                                   |
|                  |                        | 50% 미만 (10)               |                          |                                                   |
|                  |                        | 신규자 및<br>비정규직             | 5<br>(신규자 3 +<br>비정규직 2) |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br>*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
|                  |                        |                           |                          | 70% 미만 (0)                                        |
|                  |                        | 교육방법(20)                  |                          | 20                                                |
|                  | 일반강사** 교육 (15)         |                           |                          |                                                   |
|                  | 내부직원 교육 (10)           |                           |                          |                                                   |
|                  | 사이버 교육 (8)             |                           |                          |                                                   |
|                  |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                           |                          |                                                   |
|                  | 가점<br>(20)             |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br>자체교육자료 제작 |                          | 10                                                |
| 학부모 교육 실시        |                        |                           |                          |                                                   |
| 합계               | 합계                     |                           | 100점 (가점 시 120점)         |                                                   |

※ 부진기관 기준 : 합계 70점 미만, 기관장(원장) 교육 미이수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3 예방교육 세부 이행사항

#### 가. 계획수립

##### □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점)

##### ○ 각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연간 기본계획 수립(10점)

-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
-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기타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계획 수립

\* 공공기관은 교육신청, 여비지급 등 고충상담원의 전문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계획에 반영해야함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등)은 예산과목, 금액, 예산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

※ 유형별 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기본계획 수립 가능

##### ○ 미수립 또는 상기 항목 미반영(0점)

※ 각 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의무화(붙임 3.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붙임 4.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유치원·어린이집용))

※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붙임 5. 성폭력 예방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 나. 교육실시

##### □ 폭력예방교육 내용

- 각 개별법에서 정한 교육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관심제고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사례 중심, 사건 대응 절차 등으로 교육이 구성될 수 있도록 권장

- 개별 기관 특성에 맞는 내용을 추가한 교육 권장(사례 발표 및 토론을 통한 교육의 발표자료, 결과보고서 제출 시 가점 5점 부여)



## ※ 성희롱 예방교육(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 성매매 예방교육(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 ※ 성폭력 예방교육(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 가정폭력 예방교육(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 교육 참여(70점)

## ○ 기관장 참여(10점, 고위직이 없는 경우 35점)

- 기관장, 고위직 및 전직원\*은 교육의 시작과 끝을 함께할 때 이수한 것으로 봄
- 기관장이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부진기관으로 분류

※ 교육대상 기준은 FAQ 참조

-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하여야 할 주체인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사업주가 솔선수범하여 적극적 교육 참여 필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민간사업장의 사업주도 성희롱예방교육 등 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주체인 동시에 대상임(상급자, 근로자 포함)

## ○ 고위직 참여(최고 25점)

- 고위직 교육 참여율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부진기관으로 분류
- (고위직 공통기준) : 부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등급(직급)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장까지 포함

| 기관유형             | 고위직 분류 (예시)                                                                                   |
|------------------|-----------------------------------------------------------------------------------------------|
| 중앙부처(본부)         | 부기관장,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등 (예, 차관, 실장, 국장, 정책관)                                               |
| 중앙부처<br>일선기관     | (일선경찰서) 경무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등 과장급까지<br>(일선세무서) 재산세과장, 조사과장 등 과장급까지                                  |
| 법원, 검찰,<br>경찰    | 부기관장,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등<br>(법원) 부장판사, 판사, 사무국장 등<br>(검찰) 부장검사, 검사, 사무국장 등<br>(경찰) 차장, 부장 등 |
| 지방법원,<br>지방검찰청 등 | (지방법원지원) 부장판사, 판사, 사무과장 등<br>(지방검찰청지청) 부장검사, 검사, 사무과장 등                                       |
| 지자체, 지방의회        | (광역) 부시장·부지사, 실장, 국장 등<br>(기초) 부시장·부군수, 실장, 국장, 과장 등<br>(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사무국장 등                 |
| 교육청              | (교육청) 부교육감, 국장 등<br>(교육지원청) 국장, 과장 등                                                          |
| 공직유관단체           | 부기관장, 부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부서장<br>(예)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인재경영처장 등                                       |
| 초·중·고교           | 교감 및 부장교사, 행정실장                                                                               |
| 대 학              | 부기관장(부총장), 실·처장 및 전임교원(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

※ 고위직이 없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장 교육참여를 35점으로 평가함

## ○ 직원 및 학생 이수율(최고 30점)

- 기관장 포함, 재직 중인 전 직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지무요원, 무기계약직(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 외부상주인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용역직원, 대학의 경우 기업체 위탁교육생 포함)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

- 중·고등학생은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초등·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유치원·어린이집 원아는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으로 건전한 성인식 확립을 위해 학년 및 연령에 맞는 교육 실시
  - ※ 대학생 이수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인원은 4월 정기 대학정보공시에 게재된 인원으로 정함
  - ※ 학생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대상은 아니나, 필요시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권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초·중·고)는 직원의 교육 이수율이 7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대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제외)
- 각급학교(초·중·고)·대학교는 학생의 교육 이수율이 5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2020년부터 적용) (유치원·어린이집은 제외)
- 신규자 및 비정규직 참여(신규자 : 3점, 비정규직 : 2점)(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임용 전·후 신규자 관할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직원 신규자 과정을 활용한 교육 실시 협조

※ 특히 자체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공공기관은 적극 참여
  - 비정규직(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 등 포함) 등 직원 외 인력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
  - 각각의 교육 이수율이 70% 이상일 경우에만 점수 인정
- 결과보고서
  - 교육 시행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적 제출 시 증빙으로 제출
  - \* 교육일시, 교육내용, 참여인원, 교육방법, 직급별 분류(기관장, 고위직, 전체직원, 신규자, 비정규직, 학생 등)

**【부적합한 결과보고서(예시)】**

- 다른 교육분야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한 경우  
예) 성매매 예방교육 결과보고서에 성희롱 예방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2~3개의 교육 실시 후 모든 교육분야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한 경우
- 입력한 교육인원수와 결과보고서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경우
- 4개 교육분야를 합쳐서 1~2시간 교육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 기관장참여여부·고위직 참여율이 증빙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교육방법(최고 20점)**

- ※ 교직원과 학생 대상 교육방법이 다를 경우, 보다 높은 배점의 교육 방법을 기관 대표 교육 방법으로 인정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20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위촉된 전문강사 (강사양성 협력기관 위촉강사 포함)
-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보건교사 또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에 의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 대학 내 양성평등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과목의 교원, 대학 성평등 상담센터장 등 대학 내 양성평등을 위한 기관의 장(대표 또는 최종책임자) 및 전문상담원에 의한 예방교육(단, 외부기관이 아닌 대학 내 교육 시에만 인정)
- \* (강사 1인당 교육 대상 규모) 교육과정(과목)의 특성 및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강사와 학습자간 및 학습자 상호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토론식 교육 권장

**○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15점)**

- 전문강사로 인정되지 않는 모든 외부 초청 강사(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부직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경우 포함)

-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보건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 토론, 세미나, 연극(인형극 포함), 뮤지컬 등 성인지력(폭력민감성) 제고 및 폭력예방 관련 공연에 의한 교육방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일반강사와 동일한 교육방법으로 인정
  - ※ 일시 및 장소, 참여자 명단, 토론·세미나 등의 주제를 적시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품의서 또는 이행결과서 제출 시 교육으로 인정
  -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성인지력 제고 및 폭력예방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

조직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및 폭력예방 인식 제고 등 예방교육과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경우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방법과 동일하게 인정

| 프로그램 적합성 여부 체크리스트 |                                             |
|-------------------|---------------------------------------------|
| 관점                | 1. 양성평등 및 인권 가치에 부합하는가                      |
| 내용                | 2. 양성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내용구성으로 타당한가           |
| 방법                | 3.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
| 효용                | 4. 폭력을 허용하는 편견 깨기 및 예방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
|                   | 5. 폭력예방 실천 등 행동변화 및 조직의 폭력예방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는가 |

○ 내부직원에 의한 교육(10점)

- 소속직원이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PPT, 동영상 등 시청각교구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 훈시 등 단순고지와의 차이점은 자체 예방지침에 대한 구체적 안내 등 논리구조를 갖춘 교육자료 및 담당(책임)자에 의한다는 점이며, 교육자료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 사이버 교육(8점)

-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한 교수내용 전달, 학습자의 활동 참여, 온라인 평가 등을 통한 교육 성취도 달성 등 쌍방향 소통에 기초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 편성에 초점
  - ※ 사이버교육은 학습자 개별 ID로 학습활동(평가, 상호작용, 진도율 등)이 포함된 개별 이수 확인이 가능한 교육으로, 교육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과정 운영 가능
  - ※ 교육관련 사항은 <http://www.kigepe.or.kr> 및 이러닝센터 참조(031-936-5900)

## ○ 시청각 교육 등 기타(5점)

- 영상물 등 교육매체를 주로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
- 해당 동영상 자료를 기관 내 시스템에 탑재하여 일방향적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이버 교육’이 아닌 ‘시청각교육(집합)’으로 인정함
  - ※ 단, 교육실시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으로 인정함
  -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교육자료실”의 영상물 및 간행물 활용 권장

## ○ 교육 수료 후 효과성 측정(권장)

- 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교육 효과성 측정을 실시하여 교육대상자의 교육 전과 후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민감도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정도에 대한 평가 실시
  - ※ 운영안내 [붙임9 ~ 붙임12] 활용

## ○ 기타

- 교육 불인정 사례
  - \* 회의 시 훈시 등 단순 고지
  - \* 학교 등에서 전체 집합교육 후 불참자의 경우 전달교육(예, 자료전달, 15분 정도 요지 전달)으로 예방교육을 갈음하는 경우
  -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교육 실적으로 불인정
  - ※ 민간사업장의 경우도 동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③ ~. 다만, 단순히 교육 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시 교육 불인정 강화
  - 금융 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한 무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제도 취지를 훼손하거나 교육내용의 부실 우려가 높음
  -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 기관으로 지정(실적입력시 해당여부 체크)

## 다. 가점 사항

### □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실시(5점)

- 토론, 세미나 또는 연극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5점)
  - 토론 및 세미나 진행 시 활용한 발표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
  - 토론, 세미나 또는 연극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 토론, 세미나 또는 연극 내용, 결과(주요 발언, 제언 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결과 보고서 제출

### □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 교육자료 제작(10점 또는 2점)

- 여성가족부에서 추천하는 우수 교육 콘텐츠(동영상, 교재, 강의안 등)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중 ‘교육정보 - 교육자료실 - 폭력예방 교육자료’의 영상물 및 간행물 활용
    - ※ 홈페이지에 <추천콘텐츠>임이 표기됨
  -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 중 ‘폭력예방교육 소개 - 자료실 - 교육자료실’의 영상물 및 간행물 활용
- 기관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민간 부문에서 활용중인 교육 자료도 여성가족부의 확인·평가 절차를 통해 ‘추천 콘텐츠’ 공모 및 등록 가능
  - ※ 관련 문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02-3156-6013, 6130 / contents@kigepe.or.kr)
- 동영상, 리플릿, 포스터, 안내자료 등을 교육 자료로 제작

### □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5점 또는 3점)

- 기관 구성원들이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 및 규정, 학칙 등에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

###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교 자치기구를 통한 예방교육 모니터링 실시(2점)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교 자치기구를 통한 예방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교육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점 부여(2점)

□ **직급별 별도 추가 교육 실시(8점)**

- 고위직 또는 관리자 대상 교육 등 직급별로 추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가점 부여

□ **학부모 교육 실시(10점)**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생, 보육아동과 함께 또는 별도로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 단, 가정통신문 발송은 학부모교육으로 불인정

**라.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 사항**

※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 고충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중 1개 항목이라도 미 이행시 부진기관으로 분류

□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필수)**

- 고충상담원은 3년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포함하여 피해자가 고충신청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 남·녀 각 1인 이상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총 2인 이상 지정)

※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인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고충상담원 지정 가능

- 기관 고충상담원 중 3년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을 시 해당 항목 불인정으로 부진기관 분류(2019년 실적에 적용)

☞ 기관 고충상담원 중 2017년 이후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또는 심화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을시 2019년에 교육을 필히 이수

※ 고충상담원 심화교육(보수교육)도 인정

※ (2020년부터) 기관 고충상담원 신규지정시 3개월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시 해당 항목 인정

☞ 전보 등 조직내 인사에 의해 고충상담원이 바뀌고 고충상담원 교육이수가 지연될 때는 기존 상담원을 복수로 계속 지정하여 사건 상담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조치 필요



- 사건이 은폐·축소되지 않도록 상담·조사 과정에서부터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 기관 자체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권장)

-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중 소속·산하기관의 고충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자체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 가능

☞ 기관은 교육계획을 세워 공문으로 여성가족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승인통보를 받은 후 교육 실시, 1개월 이내 결과 보고

\* [붙임13]참조

#### ○ 자체 교육 운영 기준

- (기관요건) 예산, 시설 및 교육 관리·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
- (운영방식) 회당 교육인원 수 적정유지, 집합교육, 만족도 조사 등
- (교육시간) 7시간 이상 집합교육
- (교육과정 및 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근거, 성희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및 능력 배양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내용으로 구성

| 교정명                          | 주요내용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
| 성인지 감수성<br>성 평등한<br>조직문화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 감수성 이해</li> <li>- 성인지감수성과 젠더 폭력의 상관관계 이해</li> <li>- 조직문화의 개념 및 유형</li> <li>- 성희롱(성폭력) 발생 요인과 조직문화</li> <li>-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li> </ul>    | 강의 및 토론       | 2H   |
| 성희롱(성폭력)<br>관련 법제도,<br>사례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법령과 성희롱</li> <li>-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상의 성희롱</li> <li>-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유형, 사례</li> <li>-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li> <li>- 성희롱·성폭력 상담기법 이해</li> </ul> | 강의, 실습,<br>토론 | 3H   |
| 고충상담원의<br>역할 이해 및<br>상담기술 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방지 주체별 대응</li> <li>- 고충사례별 상담 실습</li> <li>- 착안 사항 및 개입 전략</li> <li>- 2차 피해 예방</li> </ul>                                             | 강의, 실습,<br>토론 | 2H   |

\* 본 교육과정은 교육인정을 위한 최소 기준요건임.

- (강사) 고충상담원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적합한 강사를 초빙

| 교육과정                      | 공통기준                                                                                           | 우대                                   |
|---------------------------|------------------------------------------------------------------------------------------------|--------------------------------------|
| 성인지 감수성,<br>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 양성평등분야 관련 교육, 연구,<br>상담 및 단체활동 경력자<br>- 여성학 및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br>또는 양성평등관련 연구 및 강의<br>경력이 있는 자 등 | -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br>- 성희롱, 성폭력 전문강사     |
| 성희롱(성폭력) 관련<br>법제도, 사례분석  |                                                                                                | - 여성폭력관련 분야 변호사,<br>상담소장 등           |
|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br>및 상담기술 훈련 |                                                                                                | - 성희롱·성폭력예방 관련 상담<br>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필수)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고충상담창구는 기관 내 독립적인 기구로서 운영하거나 인사 또는 복무, 노조(직장협의회) 등 부서 내 설치가능(상담창구로 운영 중임을 확인 가능한 공식 문서 필요)
  -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근무기관은 독립적인 고충상담창구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30인 미만 기관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고충상담원 소속 부서 내 설치 권장
- 업무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기관 특성에 맞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의무화
  -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의무설치 대상은 아님
- 작성된 내용에 관하여는 담당자 외에 공개 또는 열람되지 않도록 함
-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
- 고충접수 처리대장 및 성희롱 고충 신청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임
  - ※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고충상담창구 미설치로 인한 부진기관 지정에서 제외

## □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포함) 마련(필수)

- 기관별 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작성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은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을 참고하되 기관의 공식규정(‘예규’ 등) 형태로 마련하여야 하며,
  - 직장 내 구성된 관련 협의회(노조 등) 또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권고)
  -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준용하여 작성하고 산하기관이나 소속기관까지 준용하도록 제정할 경우 각 조항에 담당 부서 등 준용사항 상세 기재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모두 반영

###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①항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마련
  - ※ 매뉴얼 참고 : ‘여가부 홈페이지’ - 정책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인권보호 (132번, 133번)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당해 기관의 관련 징계규정 준용(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 각 기관에서는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전 직원들이 인지하고 이용 및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여야 함

## 마. 추가 안내사항

- 당해 연도 신규 설립 기관은 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되 당해 연도에 한해 예방교육 점검 유예
- 교육실시 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 결과보고서를 증빙 자료로 첨부(다만, 교육 참여자들의 서명부 등은 자체 보관)
  - ※ 서면점검 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시 확인할 수 있음(해당 기관은 구비자료 원본 제공에 협조)

|                     |                                                                                                                                                                                                                        |
|---------------------|------------------------------------------------------------------------------------------------------------------------------------------------------------------------------------------------------------------------|
| <b>양성평등<br/>기본법</b> |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 내용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 <b>남녀고용<br/>평등법</b> | <p>(법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시행령 제19조, 보존서류의 종류)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p>2. 법 제13조 및 법 제13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

- 폭력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은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은 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폭력 예방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폭력 예방 지침 등 수립 철저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제출은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에 공문으로 제출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의 실적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정부 혁신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정부혁신평가 대상기관은 동 지표에 대한 실적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차질없이 입력 하도록 협조 요청
  - ※ 정부혁신평가 대상기관 : 43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 ※ 정부혁신평가 관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지표 : 기관장 참여 여부, 고위직 및 직원 예방 교육 참여율, 직원 대상 대면교육 실시 여부

## ○ 강사양성 협력기관 홍보 및 신규지정 협조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등록·위촉된 전문강사 뿐만 아니라 강사양성 협력기관 위촉강사도 포함되므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관련 기관에 홍보 협조

##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 □ 교육방법(최고 20점)

## ○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20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http://www.kigepe.or.kr))에 등록·위촉된 전문강사(강사양성 협력기관 위촉 강사 포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현장의 교육 수요기관과 전문강사 연계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 기관 중 공공성 및 교육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 추진

## 【참고 1】

## 전년대비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 □ 전년 대비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 〈실적 점검 기준표(A)- 일반용〉

| 유형            | 평가항목                      |                         | 2018년            |                                     | 유형            | 평가항목                      |                  | 2019년                               |                                                   |
|---------------|---------------------------|-------------------------|------------------|-------------------------------------|---------------|---------------------------|------------------|-------------------------------------|---------------------------------------------------|
|               |                           |                         | 배점               | 세부내용                                |               |                           |                  | 배점                                  | 세부내용                                              |
| 계획 수립<br>(10) | 폭력 예방교육<br>연간<br>기본계획(10) |                         | 10               | 미수립 (0)                             | 계획 수립<br>(10) | 폭력 예방교육<br>연간<br>기본계획(10) |                  | 10                                  | 미수립 (0)                                           |
|               |                           |                         |                  | 수립 (10)                             |               |                           |                  |                                     | 수립 (10)                                           |
| 교육 실시<br>(90) | 교육 참여<br>(70)             | 기관장                     | 10               | 미이수 * 부진기관 (0)                      | 교육 실시<br>(90) | 교육 참여<br>(70)             | 기관장              | 10                                  | 미이수 * 부진기관 (0)                                    |
|               |                           |                         |                  | 이수 * (고위직이 없는 경우 20점) (10)          |               |                           |                  |                                     | 이수 * (고위직이 없는 경우 35점) (10)                        |
|               |                           | 고위직                     | 10               | 50% 미만 * 부진기관 (0)                   |               |                           | 고위직              | 25                                  | 50% 미만 (0)                                        |
|               |                           |                         |                  | 50~70% 미만 (6)                       |               |                           |                  |                                     | 50~70% 미만 * 부진기관 (5)                              |
|               |                           |                         |                  | 70~90% 미만 (8)                       |               |                           |                  |                                     | 70~90% 미만 (15)                                    |
|               |                           |                         |                  | 90% 이상 (10)                         |               |                           |                  |                                     | 90% 이상 (25)                                       |
|               |                           | 직원                      | 45               | 50% 미만 (20)                         |               |                           | 직원               | 30                                  | 50% 미만 (0)                                        |
|               |                           |                         |                  | 50~60% 미만 (25)                      |               |                           |                  |                                     | 50~60% 미만 (10)                                    |
|               |                           |                         |                  | 60~70% 미만 * 부진기관 (30)               |               |                           |                  |                                     | 60~70% 미만 * 부진기관 (15)                             |
|               |                           |                         |                  | 70~80% 미만 (35)                      |               |                           |                  |                                     | 70~80% 미만 (20)                                    |
|               |                           |                         |                  | 80~90% 미만 (40)                      |               |                           |                  |                                     | 80~90% 미만 (25)                                    |
|               |                           | 신규자<br>및<br>비정규직        | 5                | 90% 이상 (45)                         |               |                           | 신규자<br>및<br>비정규직 | 5                                   | 90% 이상 (30)                                       |
|               |                           |                         |                  | 70% 미만 (0)                          |               |                           |                  |                                     | 70% 미만 (0)                                        |
|               |                           |                         |                  |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                           |                  |                                     |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br>*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
| 교육 방법<br>(20) | 직원                        | 20                      |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 교육 방법<br>(20)                       | 직원            | 20                        |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                                     |                                                   |
|               |                           |                         | 사이버교육 (8)        |                                     |               |                           | 사이버교육 (8)        |                                     |                                                   |
|               |                           |                         | 내부직원 교육 (10)     |                                     |               |                           | 내부직원 교육 (10)     |                                     |                                                   |
|               |                           |                         | 일반강사 교육 (15)     |                                     |               |                           | 일반강사 교육 (15)     |                                     |                                                   |
|               |                           |                         | 전문강사 교육 (20)     |                                     |               |                           | 전문강사 교육 (20)     |                                     |                                                   |
| 가점<br>(20)    |                           | 기관 내 사례 토론,<br>세미나 등 교육 | 5                | 토론 및 세미나<br>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5) |               | 기관 내 사례 토론,<br>세미나 등 교육   | 5                | 토론 및 세미나<br>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5) |                                                   |
|               |                           |                         |                  | 추천 콘텐츠 (2)                          |               |                           |                  | 사용 (2)                              |                                                   |
|               |                           | 예방교육 이수<br>의무화 제도 마련    | 5                |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5)                   |               | 예방교육 이수<br>의무화 제도 마련      | 5                |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                                                   |
|               |                           |                         |                  | 직급별 별도<br>추가교육                      |               |                           |                  | 5                                   | 결과보고서 제출(5)                                       |
|               |                           | 반기별 1회<br>이상            | 3                | 결과보고서 제출(3)                         |               |                           |                  |                                     |                                                   |
| 합계            |                           |                         | 100점(가점 시 120점 ) |                                     | 합계            |                           |                  | 100점(가점 시 120점 )                    |                                                   |

|                                 |                           |  |      |
|---------------------------------|---------------------------|--|------|
| 성<br>회<br>통<br>방<br>지<br>조<br>치 | 평가항목                      |  | 시행여부 |
|                                 | 고충 담당자 (상담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 |  | ○, × |
|                                 | 고충 상담창구 설치                |  | ○, × |
|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 ○, × |

|                                 |                                           |  |      |
|---------------------------------|-------------------------------------------|--|------|
| 성<br>회<br>통<br>방<br>지<br>조<br>치 | 평가항목                                      |  | 시행여부 |
|                                 | 고충 담당자 (상담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                 |  | ○, × |
|                                 | 고충 상담창구 설치(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포함)             |  | ○, × |
|                                 |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기관 자체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구비 포함) |  | ○, × |

## □ 전년 대비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 〈실적 점검 기준표(B)- 학생 포함용〉

| 유형         | 평가항목                | 2018년      |                        |
|------------|---------------------|------------|------------------------|
|            |                     | 배점         | 세부내용                   |
| 계획 수립 (10) |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 10         | 기본계획 미수립 (0)           |
|            |                     |            | 기본계획 수립 (10)           |
| 교육 실시 (90) | 교육 참여 (70)          | 기관장        | 미이수 * 부진기관 (0)         |
|            |                     |            | 이수 (10)                |
|            |                     | 고위직        | 50% 미만 * 부진기관 (0)      |
|            |                     |            | 50~70% 미만 (6)          |
|            |                     |            | 70~90% 미만 (8)          |
|            |                     |            | 90% 이상 (10)            |
|            |                     | 직원         | 50% 미만 (5)             |
|            |                     |            | 50~60% 미만 (8)          |
|            |                     |            | 60~70% 미만 (11)         |
|            |                     |            | 70~80% 미만 (14)         |
|            |                     |            | 80~90% 미만 (17)         |
|            |                     |            | 90% 이상 (20)            |
|            |                     | 학생         | 50% 미만 (10)            |
|            |                     |            | 50~60% 미만 (13)         |
|            |                     |            | 60~70% 미만 (16)         |
|            |                     |            | 70~80% 미만 (19)         |
|            |                     |            | 80~90% 미만 (22)         |
|            |                     |            | 90% 이상 (25)            |
|            |                     | 신규자 및 비정규직 | 70% 미만 (0)             |
|            |                     |            |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            | 교육방법(20)            | 20         |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
|            |                     |            | 사이버교육 (8)              |
|            |                     |            | 내부직원 교육 (10)           |
|            |                     |            | 일반강사 교육 (15)           |
|            |                     |            | 전문강사 교육 (20)           |
| 가점 (20)    |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 5          | 토론 및 세미나 상세 결과보고서 (5)  |
|            | 추천 콘텐츠 사용           | 2          | 사용 (2)                 |
|            | 교육 이수 의무화           | 5          |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
|            | 직급별 별도 추가 교육        | 5          | 결과보고서 (5)              |
|            | 반기별 1회 이상           | 3          | 결과보고서 (5)              |
|            | 합계                  |            | 100점(가점 시 120점)        |

| 유형         | 평가항목                     | 2019년      |                                                |
|------------|--------------------------|------------|------------------------------------------------|
|            |                          | 배점         | 세부내용                                           |
| 계획 수립 (10) |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 10         | 기본계획 미수립 (0)                                   |
|            |                          |            | 기본계획 수립 (10)                                   |
| 교육 실시 (90) | 교육 참여 (70)               | 기관장        | 미이수 * 부진기관 (0)                                 |
|            |                          |            | 이수 * (교위직이 없는 경우 25점) (10)                     |
|            |                          | 고위직        | 50% 미만 (0)                                     |
|            |                          |            | 50~70% 미만 * 부진기관 (5)                           |
|            |                          |            | 70~90% 미만 (10)                                 |
|            |                          |            | 90% 이상 (15)                                    |
|            |                          | 직원         | 50% 미만 (5)                                     |
|            |                          |            | 50~60% 미만 (8)                                  |
|            |                          |            | 60~70% 미만 * 부진기관 (11)                          |
|            |                          |            | 70~80% 미만 (14)                                 |
|            |                          |            | 80~90% 미만 (17)                                 |
|            |                          |            | 90% 이상 (20)                                    |
|            |                          | 학생         | 50% 미만 (5)                                     |
|            |                          |            | 50~60% 미만 (8)                                  |
|            |                          |            | 60~70% 미만 (11)                                 |
|            |                          |            | 70~80% 미만 (14)                                 |
|            |                          |            | 80~90% 미만 (17)                                 |
|            |                          |            | 90% 이상 (20)                                    |
|            |                          | 신규자 및 비정규직 | 70% 미만 (0)                                     |
|            |                          |            |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
|            | 교육방법(20)                 | 20         |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
|            |                          |            | 사이버교육 (8)                                      |
|            |                          |            | 내부직원 교육 (10)                                   |
|            |                          |            | 일반강사 교육 (15)                                   |
|            |                          |            | 전문강사 교육 (20)                                   |
| 가점 (20)    |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 5          | 토론 및 세미나 상세 결과보고서 (5)                          |
|            | 추천 콘텐츠 사용                | 2          | 사용 (2)                                         |
|            | 교육 이수 의무화                | 3          |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3)                             |
|            | 학교 자치기구를 통한 예방교육 모니터링 실시 | 2          |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2)                               |
|            | 직급별 별도 추가 교육             | 8          | 결과보고서 (8)                                      |
|            | 합계                       |            | 100점(가점 시 120점)                                |

## □ 전년 대비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 〈실적 점검 기준표(C)– 유치원, 어린이집용〉

| 유형         | 평가항목                |    | 2018년           |                                                                                                    |
|------------|---------------------|----|-----------------|----------------------------------------------------------------------------------------------------|
|            |                     |    | 배점              | 세부내용                                                                                               |
| 계획 수립 (10) |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 10 |                 | 기본계획 미수립 (0)<br>기본계획 수립 (10)                                                                       |
| 교육 실시 (90) | 기관장                 | 10 |                 | 미이수 * 부진기관 (0)<br>이수 (10)                                                                          |
|            |                     |    |                 |                                                                                                    |
|            | 직원                  | 30 |                 | 50% 미만 (15)<br>50~60% 미만 (18)<br>60~70% 미만 (21)<br>70~80% 미만 (24)<br>80~90% 미만 (27)<br>90% 이상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                  | 25 |                 | 50% 미만 (10)<br>50~60% 미만 (13)<br>60~70% 미만 (16)<br>70~80% 미만 (19)<br>80~90% 미만 (22)<br>90% 이상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자 및 비정규직          | 5  |                 | 70% 미만 (0)<br>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
|            |                     |    |                 |                                                                                                    |
|            | 교육방법(20)            | 20 |                 | 시청각교육 등 기타 (5)<br>사이버교육 (8)<br>내부직원 교육 (10)<br>일반강사 교육 (15)<br>전문강사 교육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점 (20)    | 추천 콘텐츠 사용           | 5  |                 | 사용 (5)                                                                                             |
|            | 반기별 1회 이상           | 5  |                 | 결과보고서 (5)                                                                                          |
|            | 학부모 교육 실시           | 10 |                 | 결과보고서 (5)                                                                                          |
| 합계         |                     |    | 100점(가점 시 120점) |                                                                                                    |

| 유형         | 평가항목                |    | 2019년           |                                                                                                                                            |
|------------|---------------------|----|-----------------|--------------------------------------------------------------------------------------------------------------------------------------------|
|            |                     |    | 배점              | 세부내용                                                                                                                                       |
| 계획 수립 (10) |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 10 |                 | 기본계획 미수립 (0)<br>기본계획 수립 (10)                                                                                                               |
| 교육 실시 (90) | 기관장                 | 10 |                 | 미이수 * 부진기관 (0)<br>이수 (10)                                                                                                                  |
|            |                     |    |                 |                                                                                                                                            |
|            | 직원                  | 30 |                 | 50% 미만 *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15/25*)<br>50~60% 미만 (18/31*)<br>60~70% 미만 (21/37*)<br>70~80% 미만 (24/43*)<br>80~90% 미만 (27/49*)<br>90% 이상 (30/5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                  | 25 |                 | 50% 미만 (10)<br>50~60% 미만 (13)<br>60~70% 미만 (16)<br>70~80% 미만 (19)<br>80~90% 미만 (22)<br>90% 이상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자 및 비정규직          | 5  |                 | 70% 미만 (0)<br>70% 이상(신규자 3, 비정규직 2) *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
|            |                     |    |                 |                                                                                                                                            |
|            | 교육방법(20)            | 20 |                 | 시청각교육 등 기타 (5)<br>사이버교육 (8)<br>내부직원 교육 (10)<br>일반강사 교육 (15)<br>전문강사 교육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점 (20)    | 추천 콘텐츠 사용           | 10 |                 | 사용 (10)                                                                                                                                    |
|            | 학부모 교육 실시           | 10 |                 | 결과보고서 (10)                                                                                                                                 |
| 합계         |                     |    | 100점(가점 시 120점) |                                                                                                                                            |





# 6

Chapter



## 통합교육 실시방법 및 내용

1. 개 요
2. 세부 실시방법



## 1 개요

### 가. 목표

- ‘통합 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교육에 있어,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폭력의 통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

### 나.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다. 추진 방향

- 대상 기관에서는 교육 대상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계획수립,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섭외 등을 별도로 하여 개별교육을 하거나 통합하여 교육 가능
- 통합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성희롱·성매매 통합’ 또는 ‘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 통합교육은 교육방법의 형태 중 하나로서, 폭력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교육 대상, 시간 등은 개별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
  - 통합교육 콘텐츠 : 강사가 추천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강의목적에 맞게 구성

\* '18년말 기준 90여종 활용 가능

## 2 세부 실시방법

### 가. 교육 대상

- 폭력예방교육(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의무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각급 학교의 경우 학생과 소속직원을 구분하여 운영
    - ※ 유치원, 어린이집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교육 대상이나, 폭력 일반의 관점에서 내용 및 강사 등 통합교육 권장함( 아동안전교육 등과의 통합, 연계 권고)
    - ※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통합교육임

### 나. 교육 실시

#### □ 교육 계획

- 대상기관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 수립하여야 함
  -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교육방법 등을 사전에 결정
  - 강사와 사전 협의 후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의 질 확보(강의계획서 작성은 오프라인 교육만 해당)
    - ※ 통합교육에 대한 명확한 강의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교육을 실시하여 유형별 예방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 (참고자료 붙임 2) 통합교육 계획서 참조

#### □ 교육 운영

- 교육대상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
  - 통합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교육결과는 개별교육의 배점표로 이루어지므로, 각 교육의 배점을 고려하여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해야함
  - 기관장 참여, 소속직원의 교육 이수율 등을 높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것

- 개별교육의 고유성을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교육 실시
  -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에서의 총론교육과 개별교육(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함
  -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권장
  - 통합교육은 상·하반기 각 1회씩(각 2시간 이상) 연 2회 이상 교육 권장

## □ 교육 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을 권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http://www.kigepe.or.kr))에 등록·위촉된 전문강사(강사양성 협력기관 위촉강사 포함)
  -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보건교사 또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에 의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 대학 내 양성평등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과목의 교원, 대학 성평등상담센터장 등 대학 내 양성평등을 위한 기관의 장(대표 또는 최종 책임자) 및 전문상담원에 의한 예방교육(단, 외부기관이 아닌 대학 내 교육 시에만 인정)
- ‘개별’ 또는 ‘통합’에 대한 교육방식은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 선택할 수 있으나, ‘통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 적극 활용
  - 성평등 관점에서의 교육이란?  
 여성과 남성 간 사회적 차별이나 서로 다른 경험·이해에서 오는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  
 우리 사회 내 잘못된 성의식과 성문화,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시각 함양이 폭력예방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음  
 성별에 따른 지위·권력의 차이가 폭력 및 사회적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그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도록 권장

□ 학습목표(예시)

- 폭력현상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통해 폭력민감성 제고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특히 여성과 아동 등)에 대한 폭력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사회 구조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폭력민감성 제고
- 폭력 개선을 위한 실천의지 제고
  - 양성평등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폭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한 남성·여성으로 함께 살아가기
  - “존중”, “배려”, “참여”의 가치 이해를 통해 평등한 관계 만들기

□ 주요내용(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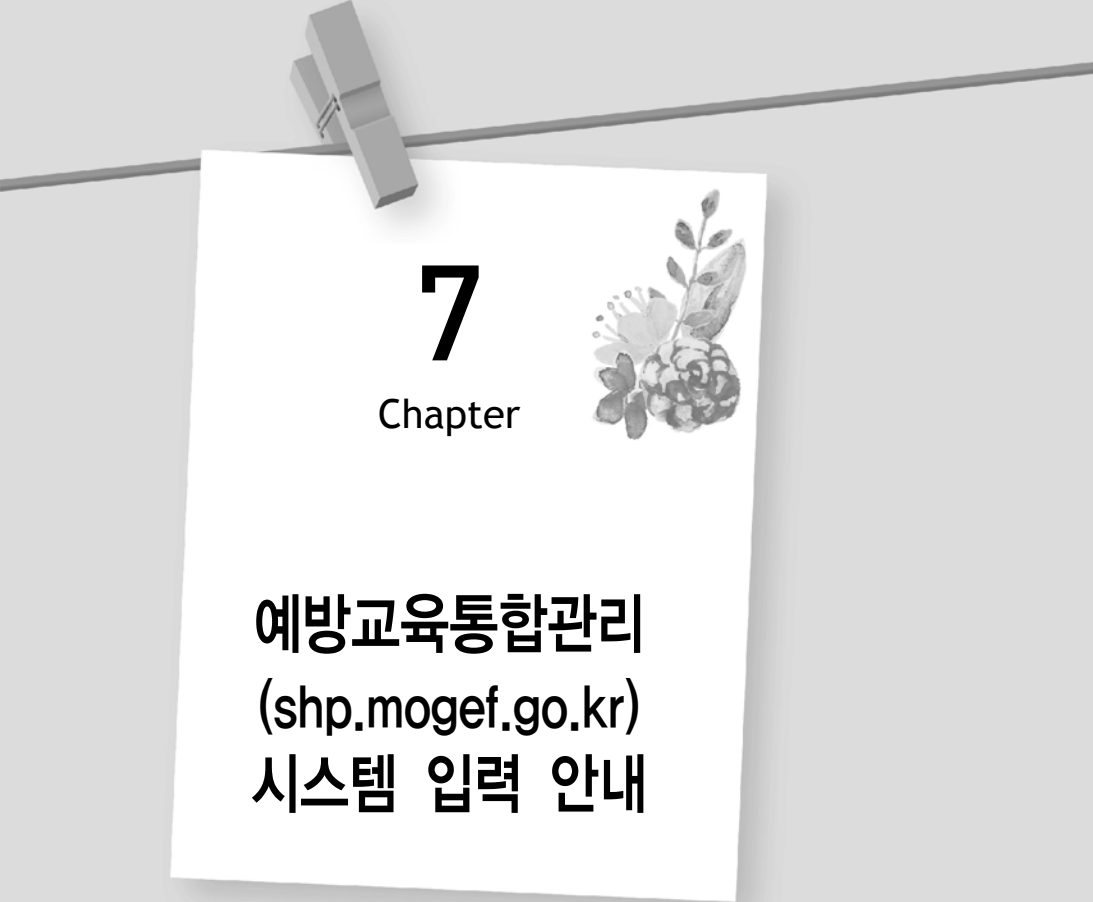
- 성인지적 관점 정립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법 등

- 개별 분야별 전문강사에 의한 통합교육도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하게 인정

※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성폭력 뿐 아니라 가정폭력 분야 모두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방법으로 인정

□ 교육 평가

- 교육 수료자 대상으로 교육 효과성 측정을 실시하여 교육대상자의 교육 전과 후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민감도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정도에 대한 평가 실시(권장)
  - ※ 운영안내 [붙임9 ~ 붙임12] 활용
- 통합교육을 실시한 전문강사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환류기능이 확보되도록 협조



# 7

Chapter



## 예방교육통합관리 (shp.mogef.go.kr) 시스템 입력 안내

1. 주의사항
2. 추진실적 입력방법
3. 전문강사 및 교육자료 찾기
4.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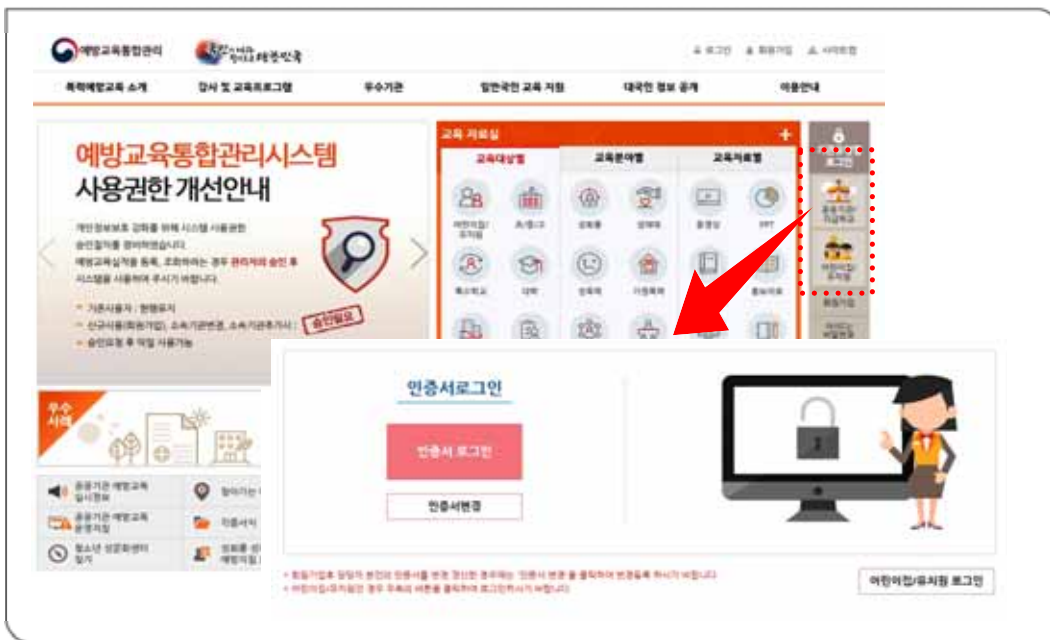


## 1 주의사항

- 2019년 기관에서 실시한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제출함
- 교육 증빙자료로는 교육계획서 및 교육실시 결과보고서 등을 첨부

## 2 추진실적 입력방법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에 접속



〈그림 1〉 기관사용자 로그인 화면

- 〈그림 1〉과 같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그림 2〉의 예방교육 실적 등록 메뉴 탭에서 교육대상 입력 및 교육유형별(성희롱 방지조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실적 입력·조회가 가능함



〈그림 2〉 예방교육 실적 등록 화면

- 〈그림 2〉의 교육대상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3〉의 교육대상입력 화면으로 이동하며, 총직원, 고위직, 비정규직, 신규자, 학생 등 교육대상 인원 기재

**교육대상 입력**

HOME > 예방교육실적 등록 > 교육대상 입력

☒ 교육대상 입력

| 총직원                     | 100 명                                                                                        | 직원                                                                                | 100 명                                                                                                                                                                                                                                                                                                                                                                          | ※ 직원수는 기관장, 고위직, 비정규직, 신규자 등 모두 포함 |              |                         |                                     |        |                 |       |           |    |                                         |
|-------------------------|----------------------------------------------------------------------------------------------|-----------------------------------------------------------------------------------|--------------------------------------------------------------------------------------------------------------------------------------------------------------------------------------------------------------------------------------------------------------------------------------------------------------------------------------------------------------------------------|------------------------------------|--------------|-------------------------|-------------------------------------|--------|-----------------|-------|-----------|----|-----------------------------------------|
| 고위직                     | <input checked="" type="radio"/> 유 <input type="text" value="10"/> 명 <input type="radio"/> 무 | <input type="radio"/> 유 <input type="text" value="10"/> 명 <input type="radio"/> 무 |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유형</th> <th>고위직기준(기관장제외)</th> </tr> </thead> <tbody> <tr> <td>국가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청포함)</td> <td>고위공무원, 국장급 이에 준하는 직위 (예: 부장급, 의원 등)</td> </tr> <tr> <td>공직유관단체</td> <td>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td> </tr> <tr> <td>초/중/고</td> <td>교감 및 부장교사</td> </tr> <tr> <td>대학</td> <td>부기관장(실·처장, 부처장 등) 및 권임교원(명교수, 부교수, 조교수)</td> </tr> </tbody> </table> | 기관유형                               | 고위직기준(기관장제외) | 국가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청포함) | 고위공무원, 국장급 이에 준하는 직위 (예: 부장급, 의원 등) | 공직유관단체 |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 초/중/고 | 교감 및 부장교사 | 대학 | 부기관장(실·처장, 부처장 등) 및 권임교원(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
| 기관유형                    | 고위직기준(기관장제외)                                                                                 |                                                                                   |                                                                                                                                                                                                                                                                                                                                                                                |                                    |              |                         |                                     |        |                 |       |           |    |                                         |
| 국가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청포함) | 고위공무원, 국장급 이에 준하는 직위 (예: 부장급, 의원 등)                                                          |                                                                                   |                                                                                                                                                                                                                                                                                                                                                                                |                                    |              |                         |                                     |        |                 |       |           |    |                                         |
| 공직유관단체                  |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                                                                                   |                                                                                                                                                                                                                                                                                                                                                                                |                                    |              |                         |                                     |        |                 |       |           |    |                                         |
| 초/중/고                   | 교감 및 부장교사                                                                                    |                                                                                   |                                                                                                                                                                                                                                                                                                                                                                                |                                    |              |                         |                                     |        |                 |       |           |    |                                         |
| 대학                      | 부기관장(실·처장, 부처장 등) 및 권임교원(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                                                                                   |                                                                                                                                                                                                                                                                                                                                                                                |                                    |              |                         |                                     |        |                 |       |           |    |                                         |
| 비정규직                    | 10 명                                                                                         |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직부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 포함) 등을 포함                                      |                                                                                                                                                                                                                                                                                                                                                                                |                                    |              |                         |                                     |        |                 |       |           |    |                                         |
| 신규자                     | 0 명                                                                                          | 신규자: 신규입용 후 2개월 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                                    |              |                         |                                     |        |                 |       |           |    |                                         |

〈그림 3〉 교육대상입력 화면

- 교육대상 입력 후, <그림 2>의 교육실적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4>의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 탭으로 이동. 해당 기관의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여부,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자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지침 마련에 대해 항목별로 작성 후 저장

성희롱 방지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추진실적 허위보고시에는 부진기관으로 분류됩니다.

※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창구, 상담원, 지침) 중 하나라도 미이행한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여부

☐ 30인 미만
 ☒ 30인 이상
 
여느 한 성(性)이 5인 미만 여부

☐ 5인 미만
 ☒ 5인 이상

□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

|                   |                                                                                                                                                                         |
|-------------------|-------------------------------------------------------------------------------------------------------------------------------------------------------------------------|
|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       | <input checked="" type="radio"/> 지정 <input type="radio"/> 미지정           남 <input type="text" value="1"/> 명 / 여 <input type="text" value="1"/> 명 / 계: 2명                 |
| 최근 3년간 고충상담원 교육이수 | <input checked="" type="radio"/> 이수 <input type="radio"/> 미이수           2019년 <input type="text" value=""/> 명           교육이수기관 <input type="text" value="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 <input type="radio"/> 이수 <input checked="" type="radio"/> 미이수           2018년 <input type="text" value="0"/> 명           교육이수기관 <input type="text" value="선택"/>         |
|                   | <input type="radio"/> 이수 <input checked="" type="radio"/> 미이수           2017년 <input type="text" value="0"/> 명           교육이수기관 <input type="text" value="선택"/>         |

※ 고충상담원 교육이수사실 결정은 2017년을 유예기간으로, '18년 실적부터 적용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창구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독립감소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 자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제정여부

☒ 성희롱 예방지침만 제정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통합 제정
 ☐ 성폭력 예방지침 별도 제정
 ☐ 미제정

관리자특별교육.hwp (8.50 KB)

보기

다운로드

삭제

파일첨부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사항 모두 반영시 인정

저장

목록

<그림 4>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등록 화면

- 성희롱 방지조치 입력 후, <그림 5>의 화면과 같이 각 교육유형별 탭으로 이동한 후 항목별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 교육실적 결과를 제출

성화통 방지조치

현재 기관 평점

고충상담원: 지경

고충상담원구: 성재

예방지침: 재경

성화통 예방교육

현재 기관 평점

91 점

적합: 55%

성매매 예방교육

현재 기관 평점

52 점

적합: 44%

부진

성폭력 예방교육

현재 기관 평점

55 점

적합: 55%

부진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재 기관 평점

18 점

적합: 0%

부진

성화통 방지조치

성화통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 추진실적 허위보고시에는 부진기관으로 분류됩니다.

※ 성화통 예방교육 실적입력은 5가지 항목 모두 입력하여야 완료됩니다.

| 번호 | 항목                                                                                                                       | 상태   | 등록일                   |
|----|--------------------------------------------------------------------------------------------------------------------------|------|-----------------------|
| 01 | 성화통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span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 5px;">입력하기</span>                 | 작성완료 | 2017-12-05 12:55:46.0 |
| 02 | 성화통 전체직원 이수율 및 교육실적 입력 <span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 5px;">입력하기</span>              | 작성완료 | 2018-02-06 09:49:24.0 |
| 03 | 성화통 예방교육 가정1.기관내 사드트론,세미나 교육 <span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 5px;">입력하기</span>        | 작성완료 | 2018-02-02 17:57:27.0 |
| 04 | 성화통 예방교육 가정2.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span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 5px;">입력하기</span> | 작성완료 | 2017-09-15 14:20:15.0 |
| 05 | 성화통 예방교육 가정3.기관내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회제도 마련 <span style="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2px 5px;">입력하기</span> | 작성완료 | 2017-12-05 12:43:17.0 |

〈그림 5〉 폭력예방교육 실적등록 화면

- 02 항목인 전체직원 이수율 및 교육실적 입력에서는 〈그림 6〉과 같이 참여인원, 교육방법, 교육날짜, 결과보고서 등의 교육 실적 내용을 등록할 수 있으며, 기관실적 입력을 완료한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이 완료됨

**성희롱 권제직원 이수율 및 교육실적 입력**

직업 교육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기관장 참석여부(10점) ☒ 참석 ☐ 불참 1 회 ☐ 불참 ?

**권제 교육 참석연월 ?**

※ 통합교육+개별교육(권제 성희롱 권제직원 이수율 및 교육 실적 참석연월 작성)

| 총연월(a)   | 참석연월(b) | 참석율(b/a) | 참고 |
|----------|---------|----------|----|
| 총격월(45점) | 100명    | 55 %     | ?  |
| 고위직(10점) | 10명     | 5 %      | ?  |
| 비정규직(2점) | 10명     | 5 %      | ?  |
| 신규자(3점)  | 0명      | 0 %      | ?  |

**교육실적입력**

교육실시 횟수 1회 ☒ 실제  
 교육분야 ☐ 개별 ☒ 통합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기관장 참석여부 ☒ 참석 ☐ 불참 권제직원 참석연월 10명  
 교육시간 110 분 교육날짜 2017-08-29 ~ 2017-08-31  
 교육방법 내부직원교육  
 결과보고서 첨부 test.txt (0.00 KB) 보기 다운로드 삭제  
 파일 첨부

· 증명자료는 교육 실시 후 교육실시, 교육방법, 교육참석인원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첨부(\* 별도서식없음)  
 · 파일 용량은 100MB이하, 파일명 100자 이하만 첨부가능합니다.  
 · 동영상 파일은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AVI, WMV, MP4 등)

**최종확인**

☒ 참석 ☐ 불참 **저장 목록**

〈그림 6〉 예방교육 실적 입력화면

- 통합교육 실적은 〈그림 7〉의 통합교육 실적 입력화면과 같이 교육분야를 통합으로 클릭 후, 실시 분야를 체크하여 교육실적 결과를 입력. 단, 교육 참여율은 각 교육유형별 탭에 들어가서 추가로 입력해야함
-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기관실적 입력이 모두 완료됨

**교육실적입력**

|                                      |                                                                                                                                                                                                                               |                                                                                        |
|--------------------------------------|-------------------------------------------------------------------------------------------------------------------------------------------------------------------------------------------------------------------------------|----------------------------------------------------------------------------------------|
| 교육실시 횟수                              | 1회                                                                                                                                                                                                                            | 이제                                                                                     |
| 교육분야                                 | <input type="radio"/> 개별 <input checked="" type="radio"/> 통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하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매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록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평동역 |                                                                                        |
| 기관장 참석여부                             | <input checked="" type="radio"/> 참석 <input type="radio"/> 불참                                                                                                                                                                  | 관계직원 참석인원 <input type="text" value="10"/> 명                                            |
| 교육시간                                 | <input type="text" value="110"/> 분                                                                                                                                                                                            | 교육날짜 <input type="text" value="2017-08-29"/> ~ <input type="text" value="2017-08-31"/> |
| 교육방법                                 | 내부직원교육                                                                                                                                                                                                                        |                                                                                        |
| 결과보고서 첨부                             | <input type="text" value="test.txt (0.00 KB)"/>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input type="button" value="다문로드"/>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                                                                                        |
| <input type="button" value="파일 첨부"/> |                                                                                                                                                                                                                               |                                                                                        |

- 첨부자료는 교육 실시 후 교육실시, 교육방법, 교육장소인원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첨부(※ 별도서식없음)  
 - 파일 용량은 100MB이하, 파일명 100자 이하만 첨부가능합니다.  
 - 동영상 파일은 업로드 하실 수 없습니다. (AVI, WMV, MP4 등)

☒ 참석
 ☐ 불참

〈그림 7〉 통합교육 실적 입력 화면

- 각 항목별 교육실적 입력을 완료한 후, 각 교육유형별 **실적결과확인**을 클릭하면 〈그림 8〉과 같이 항목별 점수 및 총점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접속 : 2018-02-23 09:43

테스트여성가족부

**예방교육실적 등록**

- 교육실적입력관리조회
- 교육대상입력
- 교육실적입력
- 실적결과확인**
- 실적입력예제

| 실적종류      | 실적종류      | 실적종류      | 실적종류      | 실적종류      |
|-----------|-----------|-----------|-----------|-----------|
| 관계 기관 협력  | 관계 기관 협력  | 관계 기관 협력  | 관계 기관 협력  | 관계 기관 협력  |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총 70점 (10점 기준)을 부진기관으로 분류  
 교육담당자: 계관, 교육담당자: 계관, 교육담당자: 계관, 교육담당자: 계관, 교육담당자: 계관

| 실적종류      | 실적종류      | 실적종류      | 실적종류      | 실적종류      |
|-----------|-----------|-----------|-----------|-----------|
| 관계 기관 협력  | 관계 기관 협력  | 관계 기관 협력  | 관계 기관 협력  | 관계 기관 협력  |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교육담당자: 계관 |

〈그림 8〉 실적결과확인 화면

### 3 전문강사 및 교육자료 찾기

- 교육 분야별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위촉된 전문강사 조회 가능함



〈그림 9〉 전문강사 찾기

-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타부처, 민간기관에서 직접 제작 또는 활용중인 교육콘텐츠를 교육대상 및 교육분야, 문서유형별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함



〈그림 10〉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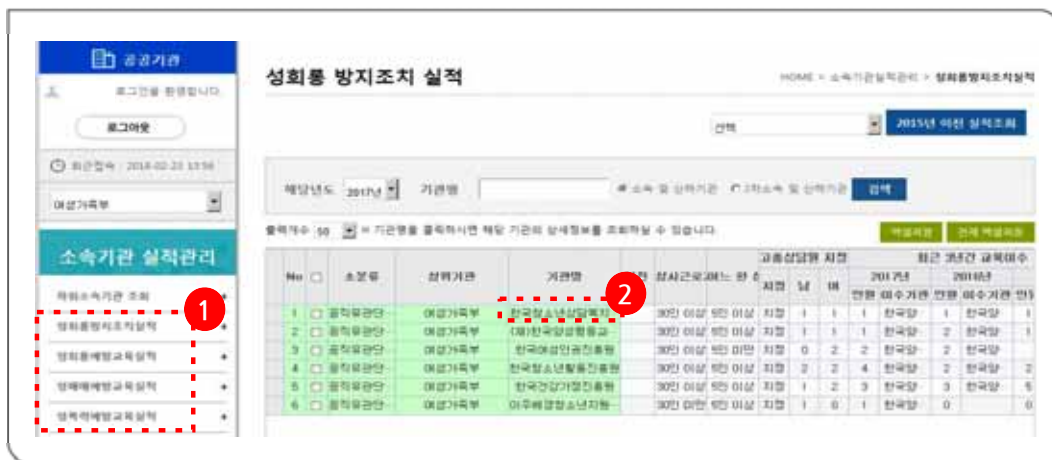
## 4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 소속기관을 관리하는 상위기관(본부)의 경우 ‘소속기관 실적관리’를 클릭하면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기관 정보와 각 교육 유형별 추진실적 평가점수, 실적 입력여부, 세부 항목별 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음



〈그림 11〉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 소속·산하기관의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유형별 예방교육실적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소속·산하기관의 추진실적 평가점수를 조회할 수 있음. 소속·산하 기관명을 더블 클릭하면 선택한 기관의 실적입력화면으로 이동하여 조회도 가능



〈그림 12〉 소속 및 산하기관 실적조회



# 8

## Chapter



# 참 고 자 료

1. 폭력 예방교육 운영 관련 주요 FAQ
2. 통합교육 계획서(서식)
3.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4. 성폭력 예방 지침 표준안 및 해설(유치원·어린이집용)
5. 성폭력 예방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6. 소속·산하기관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서식)
7.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8.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
9. 교육만족도 조사(예시)
10. 교육만족도 및 효과
11. 교육 효과 조사(교육 전/후)
12. 예방교육 개선의견 조사
13.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계획 및 결과(서식)
14.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추천 콘텐츠 현황



## 【붙임 1】

## 폭력 예방교육 운영 관련 주요 FAQ

## 예방교육대상

Q

기관에서 교육받아야 할 대상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교육대상 인원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총 수로 계산합니다. 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한 모든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종전의 규정에서, 인원 산정의 명확성을 위해 2017년 개정된 사항입니다.
- 대학의 경우(대학원생 포함), 대학생 이수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인원은 4월 정기 대학정보공시에 게재된 인원으로 정함(교직원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

Q

여러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시간강사, 방과후교사 등)는 근무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 폭력예방교육의 법적취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구성원(기관장 포함)이 별도의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육방법

Q

폭력예방을 주제로 한 공연(연극, 뮤지컬 등)도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 토론, 세미나, 외부 연극(인형극 포함), 뮤지컬 등 성인지력(폭력민감성) 제고 및 폭력예방 관련 공연에 의한 교육방법도 일반강사와 동일한 교육방법으로 인정합니다.

Q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교사가 개인적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직원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http://www.kigepe.or.kr))에 등록·위촉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사양성 협력기관\*의 위촉 강사도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되며, 그 외 강사는 일반 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간주됩니다.

\* 강사양성 협력기관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전남여성플라자, 경찰인재개발원, 국방 전직교육원,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장애여성공감, 계명대학교여성학연구소, 광주여성재단

Q

대학에서 내부 전문가가 강의를 한 경우 어떤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 양성평등 관련 교육과목 교원, 대학성평등상담센터장 등 대학 내 양성평등관련 장(대표 또는 최종책임자)에 의한 예방교육은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 배점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단, 다른 외부기관이 아닌 대학 내에서 강의가 진행될 경우에만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배점으로 인정됩니다.
- 양성평등 관련 교육과목이란,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목으로 여성, 인권, 성평등의 내용이 커리큘럼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예 시

성과 인간관계, 성평등리더십의 이해와 실천, 성의 문화적 재현, 남녀평등과 인간화, 성과성차의 심리, 인권과 사회정의, 성과 사회, philosophy of race and gender, 성과 문화 등

Q

학교 보건교사가 예방교육을 했을 경우 어떤 교육 방법으로 인정되나요?

A

- 학교 보건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한 배점을 적용합니다.
- 학교 보건교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전문강사가 아닌 일반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됩니다.(2017년 개정)

Q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강사가 성매매 예방교육을 했을 경우 어떤 교육방법으로 인정되나요?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의해 설치된 전문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①표준 프로그램으로, ②훈련된 종사자 등 직원에 의한, ③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한 배점을 적용합니다.

※ 단,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Q

가정폭력 예방교육 담당자가 학생부장이나 교무부장인 경우에 어떤 교육방법으로 인정되나요?

A

- 가정폭력 예방교육 담당자가 학생부장이나 교무부장인 경우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내부 직원강의에 의한 교육과 동일한 배점을 적용합니다.

Q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내부직원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 어떤 교육방법으로 인정되나요?

A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http://www.kigepe.or.kr))에 등록·위촉된 내부 직원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 교육 방법으로 배점화되며, 폭력예방교육 관련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내부직원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일반강사 교육방법으로 인정합니다.

Q

동영상 자료를 기관 내 시스템에 탑재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이버교육'에 해당하나요?

A

- 동영상 자료를 기관 내 시스템에 탑재하여 일방향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는 '사이버교육'이 아닌 '시청각교육(집합)'으로 인정합니다.
- 단, 교육실시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으로 인정합니다.

Q

여러기관이 합동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하면, 이 사항도 개별기관의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나요?

A

● 예방교육을 실시한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육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계획수립과 실적입력을 개별기관에서 제출(입력) 하여야 합니다.

Q

전화와 팩스를 통해서 금융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하여 무료 예방교육을 실시해 준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육도 인정되나요?

A

● 금융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한 무료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제도 취지를 훼손하거나 교육내용의 부실 우려가 높아 교육 실시로 불인정 합니다.

※ ('18년 신설) 영업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 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결과보고서 양식

Q

폭력예방교육 결과보고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A

● 결과보고서는 별도의 양식이 따로 없으며, 교육 시행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적 제출시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일시, 교육내용, 참여인원, 교육방법, 직급별 분류(기관장, 고위직, 전체직원, 신규자, 비정규직, 학생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학생 예방교육 실시 분야

Q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포함되나요?

A

- 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은 아니나, 기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에 학생이 포함되는 사항이 맞나요?

A

-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과 중·고등학생은 의무대상입니다.
- 단, 초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은 아니나, 기관 자율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군복무중인 군인의 경우에는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에 해당됩니다.

## 고충상담원 지정 및 고충상담원 교육

Q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인정되나요?

A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충상담원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연수」, 우정공무원 교육원 등



- 단, 자체 고충상담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 프로그램운영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에 공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 여성가족부(02-2100-6445)

Q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고충상담원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A

- 기관에 지정된 고충상담원 중 3년 이내('17~'19년)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을시, 해당 항목 불인정으로 부진기관으로 분류됩니다.('19년 실적에 적용)
- 단, 전보 등 조직내 인사에 의해 고충상담원이 바뀌고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가 지연될 경우, 기존 상담원을 복수로 계속 지정하여 사건 상담 등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기관 차원에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상담창구 관련

Q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 사이버 신고센터는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설치하여 조직 구성원이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필수)

※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관 중 기관의 예산 여건 등으로 사이버신고센터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CEO핫라인, 상담 전용 이메일 등 방법을 사이버신고센터 설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단,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지정된 고충상담원 외에는 공개 또는 열람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등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Q

상급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배너를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연결한 경우에도, 소속기관의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로 인정되나요?

A

- 고충상담창구 설치의 기관 단위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에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는 기관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이버신고센터도 이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Q

상급기관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에서도 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나요?

A

- 상급기관의 예방지침 상 그 적용범위가 산하·소속기관까지 명시된 경우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특성에 맞게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Q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고충처리 운영, 징계규정 등이 통합되지 않고 각기 규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해야 하나요?

A

● 기관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상담, 고충처리 창구 및 운영 등을 포함하여 별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당해 기관의 관련 징계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Q

상급기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가 이미 설치·구성되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서도 별도 설치·구성이 필요한가요?

A

● 상급기관의 고충상담원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범위가 소속기관까지 적용될 경우 별도 운영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속기관에서도 고충상담창구, 고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고충상담원 지정 가능

※ 동일 성(性)이 5인 미만인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가능

## 타 법에 근거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Q

다른 법률에 근거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도 전문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A

●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복지법에 있는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청소년성문화센터) 등도 성폭력예방교육 법령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어린이집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제출

Q

영아 전담 어린이집도 학생 교육 실적을 제출해야 하나요?

A

- 영아의 경우, 2세이하(0~24개월이하)의 교육실적은 제출 유예 가능합니다. 영아 전담과 상관없이 종사자의 교육실적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영아의 경우 의사표현과 자기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Q

어린이집 인수로 대표자 및 상호명이 변경시에도 교육실적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A

- 이 경우는 기관이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 교육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Q

3월에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연중에 휴원 또는 폐원하게 된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A

- 2019.12.31 기준 존속하는 기관은 교육실적을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관 내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가점)

Q

기관 구성원들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 예방교육 이수 의무를 내부지침 및 규정, 학칙 등에 제도를 마련한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 예로는 ①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를 학칙에 반영, ② 교육이수여부를 성과평가(인사고과, 성과상여금 평가)나 승진인사에 반영, ③ 교원 재임용시 교육이수 여부가 반영된 업적평가 점수 적용, ④ 신규 임용교원은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 ⑤ 재학생의 예방교육 이수여부를 졸업요건 충족사항으로 포함, ⑥ 복학생은 복학신청과 함께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기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지침, 제도, 규정, 훈령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모두 인정합니다.

## 통합교육 관련

Q

통합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 ‘통합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교육에 있어,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 폭력의 통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함으로써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교육분야 및 대상의 확대에 따라 유연하게 교육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육제도의 본래 취지(범죄예방+성평등)를 구현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Q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 기준은?

A

- 통합교육 전문강사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demsnew.kigepe.or.kr>)에 등록·위촉된 전문강사(강사양성 협력기관 위촉강사 포함)이며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보건 교사(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 대학성평등상담센터장 등 대학 내 양성평등 관련 장, 양성평등 관련 과목 교원 및 청소년성문화 센터장에 의한 통합교육도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배점으로 인정합니다.

- 개별 분야 전문강사에 의한 통합교육도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동일한 배점으로 인정됩니다.

※ (예)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성폭력 뿐 아니라 가정폭력 분야 모두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방법과 동일한 배점으로 인정

Q

통합교육은 사전에 예방교육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나요?

A

- 통합실시 필요성 및 세부내용(시기, 내용, 방법 등) 등에 대한 계획을 교육 실시 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단, 사이버 강의 등 온라인 형태로 교육을 진행 할 때에는 강의 계획서 수립 없이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Q

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하였을 경우, 강의시간도 동시에 단축되나요?

A

- 각 기관에 법률에 의해 부여된 사항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에 기반한 의무교육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의 점검기준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입니다.
- 따라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시간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최소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Q

통합교육을 실시할 경우, 평가기준(실적점검기준표)은 어떻게 되나요?

A

- 통합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교육 결과는 각 교육유형별 실적점검 기준표를 기준으로 각각 평가하므로, 기관 유형별 적용 대상에 맞는 실적점검기준표 <점검기준표(A)-일반용, 점검기준표(B)-학생 포함용, 점검기준표(C)-유치원·어린이집용>를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학교의 경우 폭력예방교육 분야별 교육대상이 상이한바 (학생포함여부), 각 교육분야에 맞는 실적점검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기관 유형                    |        | 〈실적 점검 기준표 (A)<br>- 일반용〉 | 〈실적 점검 기준표 (B)<br>- 학생 포함용〉 | 〈실적 점검 기준표 (C)<br>- 유치원, 어린이집용〉 |
|--------------------------|--------|--------------------------|-----------------------------|---------------------------------|
| 국가기관<br>지방자치단체<br>공직유관단체 |        | 성희롱*·성매매·<br>성폭력·가정폭력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학교                       | 초등학교   | 성희롱*·성매매                 | 성폭력·가정폭력                    | (해당 없음)                         |
|                          | 중·고등학교 | 성희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해당 없음)                         |
|                          | 대학교    | 성희롱*·성매매                 | 성폭력·가정폭력                    | (해당 없음)                         |
| 유치원·어린이집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성폭력                             |

※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기관은 〈실적 점검 기준표(A-1) - 성희롱 방지조치〉에 따라 추가로 해당 실적 점검

## 기타 사항

**Q**

기관의 신설, 폐지, 통폐합, 기관명칭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해당기관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반과에 전자공문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위기관명, 기관명, 기관주소, 변동사유, 담당자 연락처 등 필히 기재

※ 전자공문 발송 불가능한 경우 해당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후, 이메일 (shp123@korea.kr)로 발송



## 【붙임 2】

## 통합교육 계획서(서식)

※ 내외부 강사, 전문강사 등에 의한 오프라인 교육 시에만 통합교육 계획서 작성

☐ 교육목표

☐ 교육개요

☐ 소요예산

☐ 강의 계획서\*

\* 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합교육을 하는 강사와 기관이 협의하며 작성

|            |                                                 |      |          |          |          |
|------------|-------------------------------------------------|------|----------|----------|----------|
| 진단         | 1. 교육주제                                         |      |          |          |          |
|            | 2. 교육대상 및 대상별<br>특성 / 인원                        |      |          |          |          |
|            | 3. 요구분석결과                                       |      |          |          |          |
| 설계         | 1. 목표설정                                         |      |          |          |          |
|            | 2. 매체선정                                         |      |          |          |          |
|            | 3. 교수방법                                         |      |          |          |          |
| 개발 및<br>실행 | 1. 차시구성                                         |      |          |          |          |
|            | 2. 교육장소                                         |      |          |          |          |
|            | 3. 필요기자재                                        |      |          |          |          |
| 개발 및<br>실행 | 4. 실행                                           | 진행순서 | 교수<br>매체 | 교수<br>방법 | 시간<br>배분 |
|            | ① 도 입<br>• 주의집중<br>• 동기부여<br>• 학습목표<br>• 선수지식 등 |      |          |          | 분        |
|            | ② 전 개<br>• 주요내용                                 |      |          |          | 분        |
|            | ③ 심 화(발전)<br>• 실습 & 피드백                         |      |          |          | 분        |
|            | ④ 정 리<br>• 질문과 답변<br>• 마무리&연결                   |      |          |          | 분        |

## 【붙임 3】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4, 6395)

※ 동 지침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의 마련을 위한 안내이<sup>고</sup>, 각 기관은 본 내용을 참조해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지침을 제정하여야 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관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침의 근거법률이 「양성평등기본법」(2018.3.27. 공포, 2018.9.28. 시행)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3. 13. 공포, 2018.9.14. 시행, 이하 ‘성폭력방지법’)임을 명시

## 제2조(적용범위)

##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기관의 장과 소속 구성원(○○○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학생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 지침의 적용대상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재직 중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 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과 소속 학생이 포함되어야 함
-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까지 적용범위에 넣음으로써 기관이 해결하여야 할 성희롱·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해서 명시

###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2조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근거한 성희롱 개념을 지침에서 명시

\*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성폭력 개념 명시

###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의 책무)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관장에게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기관장에게 피해자 보호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조직 구성원에게 천명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예방 효과를 높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구제절차를 안내
- 성희롱·성폭력 방지에 있어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관장이 예방 교육에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있음
- 고충상담원 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실시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의 수립 필요

###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① ○○○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기관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관련사항을 점검

- 예방교육 관련 계획수립 여부,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참여율, 고충상담 창구 설치 등 방지조치, 사건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점검
- 공공기관의 기관장 또는 고위직 임원이 행위자로 지명된 경우, 상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 상급기관은 세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참고 :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기관장 또는 고위직 임원이 행위자인 경우 기관에서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급기관에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휘·감독 하도록 함
- 조사를 이관할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 피신고인에게 알려 사건처리 현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제6조(고충상담창구)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부서(○○노조, ○○성희롱·성폭력 전문기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관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명시
  -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부속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고충상담창구 설치 근거 명시
  - 고충상담창구 설치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등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소속 직원의 복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므로 복무담당부서의 소관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고충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여건에 따라 복무담당 부서 외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여성정책 관련 부서, 외부 전문기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 등을 지정 할 수 있음
- 고충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되 남·녀 각 1인 이상으로 지정
  -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없이 동일 성으로 2인 이상 지정 가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인 이상 지정 가능
  - 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지사 별로, 또는 사업본부 별로 고충상담원을 지정할 것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근무기관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30인 미만 기관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고충상담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 내 설치 권장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예시
  - 기관 사정 및 필요에 따라 상담과 조사 기능을 통합하거나 구분 가능
- 직접적인 대면 내지 전화 상담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담 및 신고를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 된 사실이나 내용은 고충상담원만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여 2차 피해를 방지

##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① ○○○기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기관의 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⑤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훈련의 시기와 횟수를 명시
  -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3개월 이내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2020년부터 의무화)
-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함
- 피해자가 근무 조건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동료와 상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성희롱·성폭력의 상담과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피해자는 근무 조건 및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내에서 상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제8조(예방교육)

### 제8조(예방교육)

- ①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제20조1항1호)
- ④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소관 부서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방법을 예시하고, 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
  - 교육의 방법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찾기」 등을 활용한 전문가 강의와 기관 내 담당자의 설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관장 훈시 혹은 영상물 시청만으로는 미흡하며 별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예방교육은 양성평등 감수성 제고를 위해 매년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예방교육 필요
- 업무 및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고객 등에 의한,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방지 및 대처 교육 필요
- 성희롱·성폭력 방지 효과성 제고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및 보호를 위하여 고위직과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 실시 권장
- 성희롱 방지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학생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권장
- 교육실시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예방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는 기관장의 결재를 얻도록 하고 교육 참석자 명단은 서명(날인)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은 구성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 제9조(고충상담)

#### 제9조(고충상담)

-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신청의 방법 안내
  - 상담 시에는 관련 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피해자가 고충업무 담당부서가 아닌 자신의 상급자나 관리자에게 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고충상담창구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제10조(조사)

## 제10조(조사)

-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 피해자등이 신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신청은 상담과 달리 서면으로써 신청하도록 하여(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함
  - 상담 단계에서도 조사 신청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피해자가 처리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함
  - 비공식 절차와 공식 절차를 분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처리기한을 명시하되 기관내부 절차에서는 사안 처리의 비밀 유지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단기간으로 설정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과정에서부터 외부 전문가가 조사하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명시
  - 기관 관리자는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기관의 안정성과 명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가 조사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 내부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되거나 처리 중인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을 명시
- 조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피신고인이 잘 알 수 있도록 서면 등으로 고지해야 함
- 성희롱 관련 각종 서식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p.78~88 참조(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주제별 정책자료- 인권보호)

### 제11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 제11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후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혹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 등 기관장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 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적절하게 부여하여 운영

##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제12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기관의 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기관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 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③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로 확정되기 전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주장자의 보호도 중요
-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및 공간 분리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마련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혹은 관리자가 피해자 및 조사협조자 등에 대하여 인사, 복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을 명시하고 불리한 처우를 열거
-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

- 고충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행위자 징계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및 행위자 등 관계자의 신원과 신청 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 기관 사정에 따라 상설 위원회로 두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처리의 편향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 제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참조)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고충상담원을 제외하고 기관장 포함 3인으로 위원회 구성 가능(단, 기관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 고충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권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방법, 의사·의결 정족수 등을 정할 수 있음
- 공정한 사건 조사를 위해 신고인과 위원간 기피신청 및 회피 권리 포함
-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나 2/3 등 기관사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
- 성희롱·성폭력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 조치 등의 조치도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을 명시

####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 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1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을 규정

## 제16조(징계)

### 제16조(징계)

- ① ○○○기관의 장은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 ④ ○○○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가 필요하므로 무관용의 원칙 적용 명시 필요
  -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효과 기대
  - 사건에 대한 소문을 확산시키는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임을 주지시키고, 발견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2차 피해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음
-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시 재발방지 교육(특별인권교육)을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성범죄 행위자가 의원면직 등을 통해 징계를 피하려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철저한 성범죄 예방과 엄정 대응 필요

##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②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방법을 규정

-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시에는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의 명령(행위자 본인부담), 성희롱·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조사 실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의 정비,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재발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은 【붙임7】 서식을 참고하여 수립하고, 공문으로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해당 상급기관(주무부처·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제출



## 【붙임 4】

## 성폭력 예방 지침 표준안 및 해설(유치원·어린이집용)

(문의 권익지원과 02-2100-6395)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기관의 장이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 기관의 장과 소속 구성원(○○○ 기관의 장과 고용 관계에 있는 자, 소속 원생 포함)으로 한다.

## 제3조(성폭력의 정의)

제3조(성폭력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의 책무) ○○○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성폭력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 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예방교육 참석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① ○○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③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감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재발방지조치 등)

제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 기관의 장은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동 지침은 기관 내 성폭력 예방지침의 마련을 위한 안내이며, 각 기관은 본 내용을 참조해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야 함

## 【붙임 5】

## 성폭력 예방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문의 (성폭력관련) 권익지원과 02-2100-6395, 권익기반과 02-2100-6442)

※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만 예방계획 수립대상이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 □ 성폭력 예방조치(예방교육 포함)에 관한 기본 방향

- 주무부처(광역자치단체 포함) 및 소속·산하기관 내 성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함
- 기관 내 성폭력에 대한 최종 책임은 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기관장은 적극적으로 성폭력 예방 노력 경주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통한 기관 내 예방 인식 제고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체 피해 예방지침 및 피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으로 2차 피해 방지

## □ 성폭력 예방조치(예방교육 포함)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교육 과제)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실시(○회),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 마련 등
  - (교육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산출근거 | 목표 대비 달성율 | '17년 | '18년 |
|------------|------|-----------|------|------|
| 전체 구성원 참여율 |      | 목표        |      |      |
|            |      | 실적        |      |      |
| 고위직 참여율    |      | 목표        |      |      |
|            |      | 실적        |      |      |

- 성폭력 예방조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 ※ 기관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및 법적 근거, 행동 지침,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 피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 ※ 피해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한 기존 예방 조치 점검내용 및 향후 내실화 방안을 포함한 대책 수립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량 제고를 위해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안내

□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예방교육 포함) 실적 점검 및 점검 결과 활용 방안

-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실적 점검 방안
  -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예방교육 포함) 실적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진행
    -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을 통해 소속·산하기관의 실적 확인
-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실적 점검 결과 활용 방안
  - 소속·산하 공공기관 평가나 정기 감사 항목에 성폭력 예방조치(예방교육 포함) 실적 점검 결과\*를 포함 하는 등 활용 계획 수립
    - \* 종사자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등

## 【붙임 6】

## 소속·산하기관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서식)

\* 서식은 교육 유형, 기관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기관명 :
- 수검자
  - 담당자 :
  - 확인자 :
-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교육일시 및 방법
  - 기관장 참여
  - 교육 참여율
    - ※ 종사자, 고위직, 학생 참여율 등
  - 교육 미실시 사유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정 여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사건 발생 처리 현황(사건 발생 시 작성)
  - 사건 개요
  - 조치 사항

|     |       |    |     |
|-----|-------|----|-----|
| 점검관 | 직위(급) | 성명 | (인) |
|     | 직위(급) | 성명 | (인) |

## 【붙임 7】

##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4, 6395)

〈○○○○○○(기관명), '19.○.○.(작성일)〉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문으로 여성가족부에 제출)

## □ 사건 개요

## ○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등) 개요

-

(직위·직급, 성별, 연령 등(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등 선택적으로 기재)

## ○ 사건 발생 일시·장소, 발생 경위 등

-

## □ 사건 처리 경과 및 기관 조치사항

## ○ 사건 처리 경과

-

(사건 접수, 사건 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결정 등 기술)

## ○ 조치 사항

## -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

(가해자에 대한 교육 여부, 징계시 징계 수준, 부서전환 또는 대기발령 등)

## -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

(피해자 보호,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 기술, 추가피해 발생시 내용 서술)

## □ 외부기관(검·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현황

- 외부기관의 조사 여부 및 조사 결과

## □ 기관 내 주요 성희롱 방지조치(성폭력 예방조치) 현황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추진계획
  - 지침 및 계획서, 또는 관련 내부 규정 첨부  
(예방지침 별첨, (연간추진계획)계획서 및 관련 결재문서 별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20○○년)
  - 교육일시, 교육방법 등
  - 참석자 수, 참여율(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비정규직 참여율) 등
  - 예방교육 방식  
(교육 실시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결과보고서(문서) 별첨)  
(시정각 교육, 외부강사·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등 방식 구분하여 서술)  
(\* 전문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이수한 자)
- 고충상담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20○○년)
  - 고충상담원 지정(남 ○명, 여 ○명)

| 구 분     | 성별 | 직위·직급 | 비 고                                                                                                                    |
|---------|----|-------|------------------------------------------------------------------------------------------------------------------------|
| 고충상담원 A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 (O, X) '00년<br/>(행정직, 관련 분야 전문가, 직장협의회 대표 등 참고사항 서술)</li> </ul> |
| 고충상담원 B |    |       |                                                                                                                        |
| 고충상담원 C |    |       |                                                                                                                        |

(연간추진계획에 당해 연도 고충상담원 지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중에 지정사항 변동시 관련 결재 필요)

- 고충상담창구 설치

-

(○○○○과(부서명)에 설치, 고충상담창구 표지판·명패 등 게시 여부 서술, 대학의 양성평등 센터 등 독립된 부서·기구로 설치된 경우 센터명과 종사자 수, 구성 등 서술)

##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 구 분      | 성 별 | 내·부 | 비 고                                                  |
|----------|-----|-----|------------------------------------------------------|
| 위원장      | 남   | 내부  | (직위·직급, 기타 참고사항 서술)                                  |
| 고충심의위원 A | 남   | 내부  | (직위·직급, 부서, 행정직(일반직), 관련분야 전문성, 직장 협의회 간부 등 참고사항 서술) |
| 고충심의위원 B | 여   | 외부  | (○○인권센터 대표, 관련분야 전문성 등 기타 참고사항)                      |
| 고충심의위원 C |     |     |                                                      |
| .....    |     |     |                                                      |

(연간추진계획에 당해연도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중에 구성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관련 결재 필요)

## □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

(항목별 구분 작성, 계획 이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성희롱 방지조치(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방안 작성

##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또는 개정 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명시,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및 여성위원 비율 고려, 사건 은폐·묵살 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대하여 부실하게 대응한 관리자에 대한 조치사항, 추가 피해 유발한 자에 대한 조치사항,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  
(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참조)

## - 고충상담창구 개선, 고충상담원 지정 개선 및 전문교육 지원,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등

## - 위 개선사항을 반영한 연간추진계획 변경(기관장 결재) 계획 작성

##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 작성

-

(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 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제고 방안, 비정규직 등의 참여율 제고 방안, 교육방법 개선 등 작성)

## ○ 기타 성희롱 방지조치(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방안



## □ 성희롱 방지조치(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방안 총괄표

| 항목              | 실적(최근 1년 기준)                               | 향후 개선계획<br>(일정 등 구체적으로 작성)              |
|-----------------|--------------------------------------------|-----------------------------------------|
| 예방지침 제정         | (현재 기준 제정되어있을 시 제정일자 기술) '○○년 ○월           | 미제정 시 제정계획 및 일정 작성<br>개정시 개정내용 작성       |
| 연간기본계획수립        | (수립여부 및 일자 기술)                             | 개선계획 일정 등                               |
| 교육실시/횟수         | ○회                                         | 목표 및 개선방안                               |
| 직원 참여율          | ○○%<br>(○○명 / ○○명)                         | 목표 및 개선방안                               |
| 기관장 참여          | 교육 ○회 중 ○회 참여                              | 목표 및 개선방안                               |
| 고위직 참여율(%)      |                                            | 목표 및 개선방안                               |
| 비정규직 참여율(%)     |                                            | 목표 및 개선방안                               |
| 교육방법            |                                            | 시청각교육, 집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등 교육방식 개선 검토 |
| 고충상담원 지정        | (남0, 여0)                                   | 미지정 시 지정계획 및 일정 작성<br>지정 개선 시 내용 작성     |
| 고충상담원 교육이수      | 개인별 교육이수 실적                                | 미이수 시 교육이수 계획                           |
|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설치(구성) 현황<br>- 총 명(남○, 여○)<br>* 외부 명, 내부 명 | 미설치(구성 개선) 시 내용, 일정 등                   |

## 【붙임 8】

##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

## 1)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항목

-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의 점검결과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거나 부진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시행을 독려하고 있으나(「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가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 상급기관이 공공기관을 감사 시 점검해야 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 감사 시 점검해야 할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내용〉

| 분류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의 내용                                                                               |
|-----------------|------------------------------------------------------------------------------------------------|
| 연간 추진계획         | 예방교육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 |
| 고충상담 및 처리 시스템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br>성희롱·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br>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 재발방지대책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
| 기타              |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2) 점검 전 사전준비

- 공공기관은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과 성희롱방지조치 실적을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에 입력·제출도록 되어 있는 바, 공공기관 감사를 실시하게 전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실적을 조회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 상급기관이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실적 관리’를 조회하여,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기관 정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 유형별 추진실적 평가점수,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 입력 여부, 세부 항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상의 소속 공공기관 실적조회〉

성희롱 방지조치 실적

HOME > 소속기관실적관리 > 성희롱방지조치실적

선택

2015년 이전 실적조회

해당년도: 2017년 기관명: 소속 및 산하기관 2차소속 및 산하기관 검색

물려가수: 50 개 기관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관의 상세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No | 소분들   | 상위기관  | 기관명        | 지      | 상세근로: 없는 원 수 | 고용상업원 지점 | 최근 3년간 교육미수 |       |     |   |
|----|-------|-------|------------|--------|--------------|----------|-------------|-------|-----|---|
|    |       |       |            |        | 지점           | 날        | 2017년       | 2016년 |     |   |
| 1  | 공직유관단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  | 30만 이상 | 5만 이상        | 지점       | 1           | 1     | 한국알 | 1 |
| 2  | 공직유관단 | 여성가족부 | (재)한국여성정책  | 30만 이상 | 5만 이상        | 지점       | 1           | 1     | 한국알 | 1 |
| 3  | 공직유관단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력개발원  | 30만 이상 | 5만 이상        | 지점       | 0           | 2     | 한국알 | 2 |
| 4  | 공직유관단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30만 이상 | 5만 이상        | 지점       | 2           | 2     | 한국알 | 2 |
| 5  | 공직유관단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가족진흥원  | 30만 이상 | 5만 이상        | 지점       | 1           | 2     | 한국알 | 3 |
| 6  | 공직유관단 | 여성가족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  | 30만 미만 | 5만 이상        | 지점       | 1           | 0     | 한국알 | 0 |

- 실제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실제 증빙자료와 대조하여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상의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정보가 허위 제출되었는지, 제출되지 않은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점검이 가능하다.
- 점검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계획서, 통합교육 계획서, 강의계획서 등

- 교육시행 결과보고서, 교육 참석자들의 서명부 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고충처리 매뉴얼 등
-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안) 등

#### 관련 근거 법률 등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0조제1항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 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3) 항목별 세부 점검사항 및 조치

#### ■ 점검항목1.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여부

##### 〈공공기관 감사 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_연간계획 수립여부〉

| 점검항목                               |                                                                       | 점검결과                                                                                                      |
|------------------------------------|-----------------------------------------------------------------------|-----------------------------------------------------------------------------------------------------------|
| 1.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
| 1)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계획 있음<br><input type="checkbox"/> 계획 있으나 내용 미비<br><input type="checkbox"/> 계획 없음 |
| 2)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외 다른 방지조치 항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고충상담원 교육,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등) | <input type="checkbox"/> 계획 있음<br><input type="checkbox"/> 계획 있으나 내용 미비<br><input type="checkbox"/> 계획 없음 |
| 3)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과목, 금액, 예산조달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계획 있음<br><input type="checkbox"/> 계획 있으나 내용 미비<br><input type="checkbox"/> 계획 없음 |

#### 【점검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각각 연1회, 1시간씩 계획되어 있는지 점검

- 유형별 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교육방법 등이 정해져 있는지,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강사와 사전협의 후 강의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
- 기타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성희롱 고충심의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점검
  - ※ 공공기관은 교육신청, 여비지급 등 고충상담원의 전문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계획에 반영해야 함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과목, 금액, 예산조달 방법 등이 정해져 있는지 점검

### 【조치사항】

- ☞ 수립된 계획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완하여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제출
- ☞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 점검항목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여부 점검

#### 〈공공기관 감사 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_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점검항목                           |                                                                                                                                                  | 점검결과                                                                                                                                                                                                                                                                                                                                                                                                                             |
|--------------------------------|--------------------------------------------------------------------------------------------------------------------------------------------------|----------------------------------------------------------------------------------------------------------------------------------------------------------------------------------------------------------------------------------------------------------------------------------------------------------------------------------------------------------------------------------------------------------------------------------|
| <b>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가</b> |                                                                                                                                                  |                                                                                                                                                                                                                                                                                                                                                                                                                                  |
| 1)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실적 제출<br><input type="checkbox"/> 실적미제출<br><input type="checkbox"/> 실적 허위 제출                                                                                                                                                                                                                                                                                                                            |
| 2)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여부 점검<br>- 기관장 예방교육 참여여부<br>- 고위직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이수율 확인<br>- 직원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이수율 확인<br>- 비정규직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이수율 확인<br>- 신규직원 2개월 내 실시여부 | <input type="checkbox"/> 참여 <input type="checkbox"/> 미참여<br><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일부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br><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일부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br><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일부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br><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일부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 3)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교육내용 점검<br>- 법령에서 정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br>- 성폭력 예방교육시 불법촬영 등 신종범죄 포함여부                                                               | <input type="checkbox"/> 반영 <input type="checkbox"/> 일부반영 <input type="checkbox"/> 미반영<br><input type="checkbox"/> 반영 <input type="checkbox"/> 일부반영 <input type="checkbox"/> 미반영                                                                                                                                                                                                                                                 |

| 점검항목 |                                                                               | 점검결과                                                                                                                                                                             |
|------|-------------------------------------------------------------------------------|----------------------------------------------------------------------------------------------------------------------------------------------------------------------------------|
| 4)   | 교육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게시 <input type="checkbox"/> 미게시                                                                                                                         |
| 5)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방법 점검<br>전문강사에 의한 교육<br>대면교육 실시여부<br>금융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한 무료 예방교육 |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br><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br><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 【점검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제대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기간 내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실적 미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실적 허위 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각 연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
  - 1시간 미만으로 실시하였거나 전체인원이 아닌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육을 일부만 실시한 것으로 간주
  - 기관장 예방교육 참여여부
  - 고위직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이수율
    - ※ 고위직 분류: 부기관장, 부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부서장(예: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인재경영처장 등)
  - 재직 중인 전 직원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이수율
  - 비정규직(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용역직원 등 포함) 등 직원 외 인력에게 교육기회 제공여부
  - 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실시여부
    - ※ 임용 전·후 신규자 관할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

#### 〈교육 실시 인원 산정 시 주의할 점〉

교육대상 인원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총 수로 계산함.

※ 종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된 모든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하였으나, 인원 산정의 명확성을 위해 2017년 개정된 사항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교육내용 점검
  - 관계법령 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이 교육내용에 반영되어 실시되었는지 확인
  - 성폭력 예방교육 시 불법촬영행위 및 불법영상물 유포행위의 위험성,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내용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했는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했는지 확인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내용<br>(「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내용<br>(「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
|-----------------------------------------------------------------------------------------------------------------------------------|----------------------------------------------------------------------------------------------------------------------------------------------|
|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br>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br>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br>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br>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br>2.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br>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br>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였는지 점검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방법 점검 :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 대면 교육 실시여부, 금융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한 무료 예방교육 실시 여부

#### 〈교육실적 불인정 사례〉

- 회의 시 훈시 등 단순 고지
- 전체 집합교육 후 불참자의 경우 전달교육(예, 자료전달, 15분 정도 요지 전달)으로 예방교육을 갈음하는 경우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 교육 시 교육 불인정 강화
- 금융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한 무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기관은 해당 교육 불인정 (2018년 신설) → 부진기관 지정

### 【조치사항】

- ☞ 공공기관이 실적 미제출 및 허위 제출한 경우 여성가족부와 협조하여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실시한 경우 추가로 교육 실시하도록 실시계획 제출요구 및 실시 독려
-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내용 게시하지 않은 경우 게시 요구
-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교육은 실적으로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 점검항목 3.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 시스템 점검

#### 〈공공기관 감사 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_고충상담 및 처리 시스템〉

| 점검항목                                     |                                                                       | 점검결과                                                                                                                 |
|------------------------------------------|-----------------------------------------------------------------------|----------------------------------------------------------------------------------------------------------------------|
| <b>3.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및 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b> |                                                                       |                                                                                                                      |
| 1)                                       | 성희롱·성폭력 상담창구 설치<br>-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상담창구 설치(필수)<br>-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여부(필수) |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br><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
| 2)                                       | 성희롱·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및 교육이수<br>- 고충상담자 지정<br>- 전문교육 이수                    |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미지정<br><input type="checkbox"/> 이수 <input type="checkbox"/> 미이수 |
| 3)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있음(법령 내용 모두 포함)<br><input type="checkbox"/> 있으나 법령 내용 일부 누락<br><input type="checkbox"/> 없음  |
| 4)                                       | 직원들이 인지하고 이용 및 참여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 적극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공개되어 있음<br><input type="checkbox"/> 미공개                                                     |

### 【점검사항】

-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 두었는지 점검



- 조직 내외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기관 내 독립적인 기구로서 운영하거나 인사 또는 복무, 노조(직장협의회) 등 부서 내 설치가능(상담창구로 운영 중임을 확인 가능한 공식 문서 필요)
  -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근무기관은 독립적인 고충상담창구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30인 미만 기관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고충상담원 소속 부서 내 설치 권장
- 고충상담창구 뿐 아니라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여부 확인(필수)
  -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님
- 고충상담원 지정여부 확인
  - 고충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고충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남·녀 각 1인 이상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총 2인 이상 지정)
  -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인 경우 남·녀 구분 없이 2인 이상 지정
  -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고충상담원 지정 가능
-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여부(고충상담원 심화교육 이수 포함) 확인
  - ('19년) 고충상담원 중 3년 이내(2017~2019년)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1명 이상인지 확인
  - 가급적 고충상담원 1/2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 권장
  - ('20년~) 고충상담원 신규 지정하였을 경우 3개월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했는지 확인
-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했는지 확인
  - 법령에서 정한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성희롱 예방지침을 직원들이 인지하고 이용 및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

〈성희롱 예방지침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조치사항】

- ☞ 고충상담창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치계획 제출 요구 및 이행 점검
- ☞ 고충상담원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지정할 것과 이행 점검
  - 담당자가 수시 교체되지 않도록 장기 근속자 등 정규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 ☞ 고충상담원 중 3년 이내(2017~2019년) 고충상담원 전문과정 또는 심화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없을 경우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
  - ※ 고충상담원 교육과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심화과정도 포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의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연수, 우정 공무원교육원 등 자체개설 교육과정

## ■ 점검항목 4.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 〈공공기관 감사 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_사건발생시 재발방지조치〉

| 점검항목                                   |                                                              | 점검결과                                                                                                                       |
|----------------------------------------|--------------------------------------------------------------|----------------------------------------------------------------------------------------------------------------------------|
| 4.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이 수립 및 시행 되었는가 |                                                              |                                                                                                                            |
| 1)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기한내 제출하였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 2)                                     |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결과와 특별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input type="checkbox"/> 반영되어 있음<br><input type="checkbox"/> 반영되어 있지 않음                                                    |
| 3)                                     | 재발방지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 <input type="checkbox"/> 제대로 이행되고 있음<br><input type="checkbox"/>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                                               |
| 4)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발생여부<br>피해자 보호조치 이행여부                         | <input type="checkbox"/> 발생 <input type="checkbox"/> 미발생<br><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사유: ) |

**【점검사항】**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는지 점검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여성가족부 및 상급기관에 동시 제출
  - 사건발생 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기존에는 매년 2월 말)
- 재발방지대책에 사건처리결과와 함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특별 인권교육 명령)
-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의 정비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재발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수립·제출된 재발방지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 사건처리과정 또는 후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발생하였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

**【조치사항】**

-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
- ☞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 및 대책 이행 촉구
-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 발생 시 이에 대한 점검 및 해결방안 강구할 것 촉구

##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 점검항목                                      |                                                                                                                                                  | 점검결과                                                                                                                                                                                                                                                                                                                                                                                                                             |
|-------------------------------------------|--------------------------------------------------------------------------------------------------------------------------------------------------|----------------------------------------------------------------------------------------------------------------------------------------------------------------------------------------------------------------------------------------------------------------------------------------------------------------------------------------------------------------------------------------------------------------------------------|
| <b>1.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연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b> |                                                                                                                                                  |                                                                                                                                                                                                                                                                                                                                                                                                                                  |
| 1)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계획 있음<br><input type="checkbox"/> 계획 있으나 내용 미비 <input type="checkbox"/> 계획 없음                                                                                                                                                                                                                                                                                                                           |
| 2)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외 다른 방지조치 항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고충상담원 교육,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등)                                                                            | <input type="checkbox"/> 계획 있음<br><input type="checkbox"/> 계획 있으나 내용 미비 <input type="checkbox"/> 계획 없음                                                                                                                                                                                                                                                                                                                           |
| 3)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과목, 금액, 예산조달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계획 있음<br><input type="checkbox"/> 계획 있으나 내용 미비 <input type="checkbox"/> 계획 없음                                                                                                                                                                                                                                                                                                                           |
| <b>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가</b>            |                                                                                                                                                  |                                                                                                                                                                                                                                                                                                                                                                                                                                  |
| 1)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실적 제출<br><input type="checkbox"/> 실적미제출<br><input type="checkbox"/> 실적 허위 제출                                                                                                                                                                                                                                                                                                                            |
| 2)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여부 점검<br>- 기관장 예방교육 참여여부<br>- 고위직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이수율 확인<br>- 직원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이수율 확인<br>- 비정규직 예방교육 실시여부 및 이수율 확인<br>- 신규직원 2개월 내 실시여부 | <input type="checkbox"/> 참여 <input type="checkbox"/> 미참여<br><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일부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br><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일부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br><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일부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br><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일부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 3)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교육내용 점검<br>- 법령에서 정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br>- 성폭력 예방교육시 불법촬영 등 신종범죄 포함여부                                                                | <input type="checkbox"/> 반영 <input type="checkbox"/> 일부반영 <input type="checkbox"/> 미반영<br><input type="checkbox"/> 반영 <input type="checkbox"/> 일부반영 <input type="checkbox"/> 미반영                                                                                                                                                                                                                                                 |
| 4)                                        | 교육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게시 <input type="checkbox"/> 미게시                                                                                                                                                                                                                                                                                                                                                                         |
| 5)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방법 점검<br>전문강사에 의한 교육<br>대면교육 실시여부<br>금융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한 무료 예방교육                                                                    |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br><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br><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 점검항목                                          |                                                                     | 점검결과                                                                                                                        |
|-----------------------------------------------|---------------------------------------------------------------------|-----------------------------------------------------------------------------------------------------------------------------|
| <b>3.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및 처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b>      |                                                                     |                                                                                                                             |
| 1)                                            | 성희롱·성폭력 상담창구 설치<br>-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상담창구 설치(필수)<br>-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필수) |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br><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
| 2)                                            | 성희롱·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및 교육이수<br>- 고충상담자 지정<br>- 전문교육 이수                  |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미지정<br><input type="checkbox"/> 이수 <input type="checkbox"/> 미이수        |
| 3)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있음(법령 내용 모두 포함)<br><input type="checkbox"/> 있으나 법령 내용 일부 누락<br><input type="checkbox"/> 없음         |
| 4)                                            | 직원들이 인지하고 이용 및 참여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 적극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공개되어 있음<br><input type="checkbox"/> 미공개                                                            |
| <b>4.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이 수립 및 시행 되었는가</b> |                                                                     |                                                                                                                             |
| 1)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기한내 제출하였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
| 2)                                            | 재발방지 대책에는 사건처리결과와 특별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input type="checkbox"/> 반영되어 있음<br><input type="checkbox"/> 반영되어 있지 않음                                                     |
| 3)                                            | 재발방지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 <input type="checkbox"/> 제대로 이행되고 있음<br><input type="checkbox"/>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                                                |
| 4)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발생여부<br>피해자 보호조치 이행여부                                | <input type="checkbox"/> 발생 <input type="checkbox"/> 미발생<br><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사유 : ) |



## 설문조사지 양식 모음

- 【붙임 9 ~ 붙임 12】 각종 설문조사지 모음입니다.

【붙임 9】 : 교육만족도 조사

【붙임 10】 : 교육만족도 및 효과

【붙임 11】 : 교육효과 조사(교육 전/후)

【붙임 12】 : 예방교육 개선의견 조사

- 목적에 맞게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활용 예)

\* 교육만족도 조사 : 붙임 9, 붙임 10

\* 교육효과 조사 : 붙임10, 붙임 11

\* 교육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 붙임 12

- 설문조사 파일 다운로드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http://shp.mogef.go.kr)) > 각종서식





【붙임 9】

## 교육만족도 조사(예시)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 표시 또는 직접 기재)

|             |              |                                  |
|-------------|--------------|----------------------------------|
| 1. 귀하의 연령은? | 만 19세 미만     | ①영유아 ②초등학생 ③중학생 ④고등학생 ⑤기타        |
|             | 만 19세 이상     | ⑥20대 ⑦30대 ⑧40대 ⑨50대 ⑩60대 ⑪70대 이상 |
|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                                  |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오(5점 척도)

| 내 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대체로<br>아니다 | 전혀<br>아니다 |
| 4. 강사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까?(해당시 답변)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대체로<br>아니다 | 전혀<br>아니다 |
| 5. 교육자료(강사PPT, 유인물 등)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대체로<br>아니다 | 전혀<br>아니다 |
| 6. 교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대체로<br>아니다 | 전혀<br>아니다 |
| 7. 예방교육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    |            |           |
|                                                                                                                                                                                                                                                                                              |           |     |    |            |           |
| 8. 귀하는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① 매우 안전하다</span> <span>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span> <span>③ 보통이다</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5px;"> <span>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span> <span>⑤ 모름/무응답</span> </div>               |           |     |    |            |           |
| 9. 귀하는 예방교육이 직장 내 <u>성희롱</u>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① 매우 도움이 된다</span> <span>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span> <span>③ 보통이다</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5px;"> <span>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span> <span>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span> </div> |           |     |    |            |           |

## 【붙임 10】

## 교육만족도 및 효과

귀하께서 받으신 폭력예방교육이 전반적으로 어떠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강사를<br>통해 교육<br>받지 않음 |
|------------------------------------|-----------------|-----------------|----------|------------|-----------|-----------------------|
|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교육내용이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이 포함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교육방법이 흥미를 유발하고, 사례나 예시 등이 적절히 사용됐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강사는 교육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지니고 있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교육이 참여하기 좋은 시간대에 마련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강사가 소속 기관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교육을 받고, 폭력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폭력예방교육이 일상생활 및 조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폭력예방교육 진행에 만족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폭력예방교육이 교육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붙임 11】

## 교육 효과 조사(교육 전/후)

귀하는 교육을 받기 전에 다음 사항에 관해 얼마나 알고(이해하고) 있었습니까?

|                                   | 매우 잘<br>알고<br>있었다 | 대체로<br>알고<br>있었다 | 보통<br>이다 | 별로<br>알고 있지<br>못하였다 | 전혀<br>알고 있지<br>못하였다 |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의미와 범위(판단기준) | ⑤                 | ④                | ③        | ②                   | ①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예방방법         | ⑤                 | ④                | ③        | ②                   | ①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 ⑤                 | ④                | ③        | ②                   | ①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 ⑤                 | ④                | ③        | ②                   | ①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점       | ⑤                 | ④                | ③        | ②                   | ①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통       | ⑤                 | ④                | ③        | ②                   | ①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 ⑤                 | ④                | ③        | ②                   | ①                   |

귀하는 교육을 받은 후에 아래 사항들을 얼마나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                                                 | 매우<br>그렇다 | 대체로<br>그렇다 | 보통<br>이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의미와 범위(판단기준)를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예방방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을 더 잘 알게 되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더 공감하게 되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붙임 12】

## 예방교육 개선의견 조사

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응답해주시시오.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폭력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폭력예방교육 시간이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교육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교육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폭력예방에 대한 직원들 간의 토론, 워크숍이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우리 기관 관리자급의 폭력예방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우리 기관의 일반직원들의 폭력예방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조직 내 폭력예방관련 규정, 지침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붙임 13】

##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계획(서식)

- ☐ 교육개요
  - 교육일시
  - 교육대상
  - 교육장소
  - 교육내용
- ☐ 세부 교육내용
- ☐ 교육 시간표

##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결과(서식)

- ☐ 교육개요
  - 교육일시
  - 교육대상
  - 교육장소
  - 교육내용
- ☐ 세부 교육내용
- ☐ 교육 시간표
- ☐ 교육 활동 사진
- ☐ 교육 만족도 결과 등

## 【붙임 14】

##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추천 콘텐츠 현황

## 1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 일반원칙

-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 위탁기관 :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 누구든지 법률에 제시된 교육내용에 대하여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여성가족부(위탁기관)의 우수콘텐츠로 추천받을 수 있음
  - 추천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평가점검 항목상의 배점 부여
    - ※ 표준 및 추천콘텐츠 활용 시 2점 가점

## 나. 폭력예방교육 표준콘텐츠 개발·보급

## □ 개요

- 여성가족부가 개발·보급하는 표준강의안은 전문강사가 예방교육 수행 시 강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할 목적으로, 그리고 교육대상기관의 교육담당자가 교육계획 수립 시 미리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제작·보급
  - 표준강의안은 교육내용 전반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으로서, 전문강사에 의한 대상별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표준 콘텐츠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실제 강의는 전문강사가 교육대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강의계획서에 따라 표준강의안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내용을 재구성한 ‘실제강의안’으로 준비하여 사용

- 표준강의안 등 교육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3년 주기로 개선될 예정이며, 교육 수요자 및 현장전문가 등의 평가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예정
- 표준콘텐츠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교육자료실([www.mogef.go.kr](http://www.mogef.go.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함

#### □ 관련 법률에 제시된 각 영역별 교육내용

| 성폭력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br>2.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에 관한 사항<br>3. 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br>4. 그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사항<br>5. (교육대상 : 아동)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br>2. 성매매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br>3. 그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br>2.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br>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br>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br>5. 그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1.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br>2.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br>3.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br>4. 그밖에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예방에 필요한 사항<br>5. (교육대상 : 아동)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

#### □ 표준강의안의 우선 활용

- 표준콘텐츠를 기본으로 교육대상과 조직특성 등에 따라 맞춤형 강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
- (구성) 표준콘텐츠는 예방교육의 목표인 성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단계별 목표를 반영하여 구성하되 공통과 개별 영역별 내용으로 나뉘 구성

## 〈표준프로그램 구성〉

| 단계별<br>핵심목표 | 핵심 내용                                                     | 세부 목차        | 주요 내용       | 영역 구분                              |
|-------------|-----------------------------------------------------------|--------------|-------------|------------------------------------|
| 1단계<br>편견깨기 | - 성역할 고정관념과<br>성차별 영향 이해<br>- 다양한 폭력의 연관성 이해<br>(폭력의 악순환) | ①총론          | 예방교육의 필요성   | 공통<br>(영역 구분과<br>무관하게 동일)          |
|             |                                                           | ②관점 정립       | 성문화와 여성폭력   |                                    |
|             |                                                           |              | 성평등 관점 이해   |                                    |
|             |                                                           |              | 생애주기별 발달이해  |                                    |
| 2단계<br>인식전환 | - 폭력 상황에 바르게<br>대처하는 태도<br>- 건강한 성역할 형성,<br>상호존중 배려       | ③실태/사례       | 발생주이 및 피해유형 | 영역별 내용<br>(성폭력, 성희롱,<br>성매매, 가정폭력) |
|             |                                                           |              | 후유증 및 특성 이해 |                                    |
|             |                                                           |              | 사례별 위기개입    |                                    |
|             |                                                           | ④법/제도        | 사법처리과정      |                                    |
|             |                                                           |              | 피해자 지원제도 이해 |                                    |
| 3단계<br>행동화  | - 분노조절, 효과적 의사소통,<br>평화로운 자기주장<br>- 갈등·문제 해결              | ⑤Action Plan | 대상별 대응전략    | 공통                                 |
|             |                                                           |              | 사건발생시 대처요령  |                                    |
|             |                                                           |              | 문제행동 예방     |                                    |
|             |                                                           |              |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                                    |

- 표준강의안은 기본·핵심·주요내용 등을 포함, 활용가이드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기획의도 및 주요내용을 교육시간과 대상에 맞게  
활용하여 슬라이드 구성 및 관련 동영상 등 강의준비가 필요함
- 표준강의안에서 제시된 내용은 교육 가이드라인이므로, 핵심주제와  
정확한 목표를 설정 후 교육형태 및 대상별 특성에 따라 슬라이드 재구성  
필요

| 구 분  | 내용                                    | 분량     | 슬라이드 수   |
|------|---------------------------------------|--------|----------|
| 기본내용 |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수적인 내용                    | 20분 내외 | 8pcs 내외  |
| 핵심내용 | 필수적으로 전달해야 할 기본내용을<br>포함한 핵심내용        | 40분 내외 | 16pcs 내외 |
| 주요내용 | 기본·핵심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인식과 이해를<br>돕는 주요내용 | 60분    | 24pcs 내외 |

\* 표준강의안의 경우 기본·핵심·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별 강의안을 지속 업데이트하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교육정보([www.mogef.go.kr](http://www.mogef.go.kr))에서 제공될 예정임



#### 대상별 핵심메시지에 따른 맞춤형 강의 내용 구성 예시

- ▶ (고위공직자) 정책입안 및 결정자로서의 책무 강조, 결정 과정에서의 원칙과 제도, 발전방안
- ▶ (공무원 등 유관업무 종사자) 정책에 대한 정확한 숙지 및 피해자 우선 관점, 지원체계 강화 등
- ▶ (공공기관 종사자) 의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
- ▶ (민간기업 종사자) 폭력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등 사회적 비용문제, 예방을 위한 적극적 참여방법 등
- ▶ (교사,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등) 사례별 올바른 대처법, 적극적 보호 참여를 위한 사회적 책임의식 등
- ▶ (대학생, 군인) 성인지적 인식개선, 폭력의 영향, 법적 절차 이해 등

### □ 기타 자료 활용

- 강사는 표준강의안의 일부 내용 및 사례 등을 교육 목적의 범위 내에서 생략, 대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방향) 강사는 표준강의안의 내용에 상응하는 사례 및 통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되도록 과학적 근거를 가진 최신 자료에 대한 충분히 신뢰성 검토를 거쳐 사용하여야 하며 책임은 강사에 있음
- (원칙) 강의안과 매뉴얼에 수록된 관련 법규와 사례, 실태, 통계 등 현황 정보를 강의 수행 시기에 맞게 업데이트하여, 교육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생략 및 대체 시) 가급적 슬라이드 단위로 생략 및 대체하고, 부득이하게 슬라이드 내부 텍스트 수정의 경우 당초 교육내용 및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되, 수정에 따른 책임은 강사에게 있으므로 신중하게 활용하여야 함
  - ※ 해당 내용 수치나 관점에 문제가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거쳐 수정·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 (개발참여) 강사 개인이 수집·활용한 자료 가운데 교육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절차를 거쳐 추천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채택 시 소정의 개발비 및 원고료 지급이 가능함

#### 다.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의견 제출

- 제시된 대상별 핵심메시지 및 표준강의안 활용방안, 전달방법 등은 현재까지 마련된 최소한의 원칙으로서, 향후 대상별 세분류 등을 통한 단계별 작업이 지속될 것이며, 강사 및 각계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자발적인 의견개진 및 우수강의 경진대회 등 자율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 다각도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며, 각 기관에서 개발한 리플렛, 동영상 등 교재 등도 추천콘텐츠 제도 등을 통해 활용이 가능함
  - ※ 표준콘텐츠 등 가점 대상인 교육콘텐츠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교육자료실([www.mogef.go.kr](http://www.mogef.go.kr))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으로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표준콘텐츠 활용강화 등 교육내용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만족도 및 교육효과성 제고
  - (1단계)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입력한 전년도 분야별 의무교육 실시관련 사항(강좌명, 강사, 교육내용, 추진방법, 만족도 조사결과, 요구사항 등) 점검
  - (2단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교육자료실([www.mogef.go.kr](http://www.mogef.go.kr))에 수록된 추천콘텐츠 활용여부 점검
  - (3단계) 기관의 전년도 교육현황 및 요구사항 등을 점검하여 전문강사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
  - (4단계) 전문강사는 대상별로 적합한 핵심메시지 설정 및 표준강의안의 단계별 내용 부분 매칭하여 분야별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 (5단계) 교육 실시 후 교육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통한 교육만족도 도출 및 적극적 성과관리

##### 표준 강의안 관련 의견수렴 및 교육자료 개발 제안

- ▶ (담당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양성부
- ▶ (대표연락처) 02-3156-6130([contents@kigepe.or.kr](mailto:contents@kigepe.or.kr))

## 2 폭력예방교육 추천 콘텐츠 제도 운영

### □ 추진배경

- 각 법률에 따라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 및 DB화, 제도적 장치 발굴이 미흡함
- 기존 콘텐츠 분석 및 DB화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맞춤형 관리 및 양질의 콘텐츠 유지를 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완성도가 있는 콘텐츠를 ‘추천 콘텐츠’로 선정하여 홍보 및 보급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접근성을 향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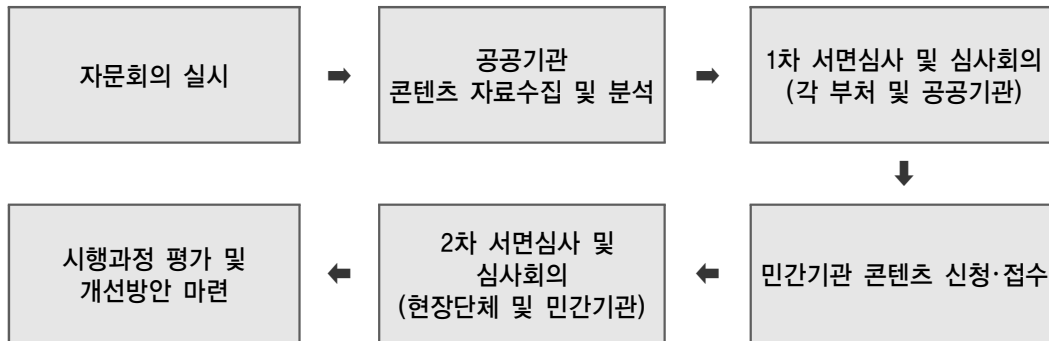
### □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폭력예방교육 활성화에 따른 교육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등에서 개발한 우수 콘텐츠 발굴·보급을 통한 교육효과성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 (필요성) 대상별 추천 콘텐츠 발굴·보급을 통한 예방교육 수용성 제고
  - 현장기관 등에서 개발·활용중인 우수콘텐츠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 대상별 효과적 교육을 위한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 발굴 및 활용 강화
  - 선정과정에서 전문가 검증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콘텐츠 품질제고

### □ 추천콘텐츠 추진 개요

- (선정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개발·활용중인 콘텐츠
  -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개발·활용 중인 콘텐츠
  - 현장단체 및 민간기관에서 개발·활용 중인 콘텐츠
- 심사위원 구성
  - (전문가 심사단) 영역별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통한 콘텐츠 내용 및 전문성 평가
  - (이용자 심사단) 영역별 전문강사 및 예방교육 담당자를 통한 콘텐츠의 활용성 평가

## ○ 선정절차



## ○ 심사절차

| 서면심사                              |                                      | 심사회의                                                |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전문가 심사단<br>이용자 심사단                   | 서면심사 자문단<br>여성가족부, 양평원<br><br>콘텐츠 선정의 적절성 및<br>쟁점논의 |
| 콘텐츠 특성<br>(저작권, 윤리적 규범,<br>접근성 등) | 콘텐츠 목표 및 내용구성<br>(목표, 성인지관점, 동기부여 등) |                                                     |

- (심사기준) 콘텐츠의 목표 및 내용구성, 특성 등 3개 영역 총 17개 문항의 체크리스트 구성

- (선정기준) 서면심사에서 심사위원의 합산 평균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콘텐츠 우선 선정 후 심사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선정

| 평가 영역             | 평가요소     | 평가지표                                                                               | 평가 배점 |
|-------------------|----------|------------------------------------------------------------------------------------|-------|
| 목표<br>(10)        | 타당성      | 1. 해당 콘텐츠의 목표는 각 영역별 교육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 5     |
|                   | 구체성      | 2. 해당 콘텐츠는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5     |
| 내용<br>구성<br>(60)  | 목표 부합성   | 3.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사례는 교육목표에 부합하는가?                                                   | 6     |
|                   | 성인지 관점   | 4.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가?                                                   | 10    |
|                   | 성찰지원     | 5. 학습자에게 성인지 관점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 6     |
|                   | 창의성      | 6.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구성이 참신한가?                                                          | 6     |
|                   | 전달방식 적절성 | 7. 해당 콘텐츠의 특성을 살려 교육대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 6     |
|                   | 학습자 특성고려 | 8. 콘텐츠의 내용은 교육 대상자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는가?                                         | 8     |
|                   | 동기부여     | 9. 교육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의집중이 되는가?                                                      | 6     |
|                   | 체계성      | 10.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자료가 구성적인 측면에서 단계성, 통일성, 일관성을 이루는가?                               | 6     |
|                   | 실현 가능성   | 11. 해당 콘텐츠에서 제시하는 폭력예방 및 대처방안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6     |
| 콘텐츠<br>특성<br>(30) | 접근성      | 12. 해당 콘텐츠의 접근 및 사용이 용이한가?                                                         | 5     |
|                   | 전문성      | 13. 해당 콘텐츠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검수과정을 거쳤는가?                                                  | 5     |
|                   | 활용성      | 14. 해당 콘텐츠의 활용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가?                                          | 5     |
|                   | 저작권      | 15. 콘텐츠는 무단 인용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저작권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는가?                                | 5     |
|                   | 윤리적 규범   | 16. 종교, 지역, 이념, 성, 계층, 다문화가정 등 윤리적 편견이나 폭력적 표현 등 교육콘텐츠로서 적합하지 못한 단어나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가? | 5     |
|                   | 정보 전달성   | 17. 해당 콘텐츠는 최신 법률 및 제도를 반영하고 있는가?                                                  | 5     |

### 3 폭력예방교육 추천콘텐츠 현황('18.12월말 기준 / 총 372종)

※ 여가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의 '교육자료실' 메뉴에서 교육 유형별·대상별·자료 유형별로 다운로드 가능

#### ☐ 성폭력(총 144종)

| 연<br>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1      | 세바시_불법촬영 영상을 보면 안되는 이유(김남훈)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세상을바꾸는시간15분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      | 세바시_성폭력 피해자 어두운 시절을<br>끝내고 공동체를 만들다(위니 리)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세상을바꾸는시간15분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3      | #METOO 공감의 불려온 변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카드뉴스 |
| 4      | #미투에서 #페이미투(PayMeToo)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카드뉴스 |
| 5      | 사랑이라구요? 범죄입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카드뉴스 |
| 6      | 펜스를, 누구를 위한 울타리인가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카드뉴스 |
| 7      | 평창동계올림픽 성폭력상담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8      | 디지털성범죄 해체하기(동영상)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9      | 스쿨미투,포스트잇붙인노원구여고학생이<br>편지를 썼다             | 프란                                    | 대학<br>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10     | Metoo는 용기, 연대의 기회, 함께 하는 것                | 프란                                    | 대학<br>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연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11 | 성폭력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br>꼭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 | 프란                    | 대학<br>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12 | #MeToo 트윗을 읽어본 '기자 선배'들의<br>반응은     | 프란                    | 대학<br>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13 | #미투 기사 악플 읽기                        | 스브스뉴스                 | 대학<br>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14 | 디지털성범죄 해체하기(PPT)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PPT |
| 15 |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해 물어보았다                  | 씨리얼                   | 대학<br>초중고                   | 2018     | 동영상 |
| 16 | “미투운동같은게한국에는없었죠?”라고요?               | 씨리얼                   | 대학<br>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17 | 피해촬영물, 이거 국산야동 아닙니다                 | 씨리얼                   | 대학<br>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18 | 저녁 메뉴로 여학생을 추천하는 단톡방                | 씨리얼                   | 대학<br>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19 | F언니의 두 번째 상담실: 데이트폭력<br>대응을 위한 안내서  | 서울특별시,<br>한국여성의전화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리플렛 |
| 20 | 성폭력 치유회복프로그램<br>햇살(아동)-사이버성폭력       |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br>(거점)    | 초중고                         | 2018     | 교재  |
| 21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매뉴얼(초등)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8     | 교재  |
| 22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매뉴얼(중등)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8     | 교재  |

| 연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23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매뉴얼(고등)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8     | 교재        |
| 24 | 세바시_용기 있는 목소리를 지지해야 하는<br>이유_(진선미)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5 | 세바시_여성에 대한 폭력, 우리 모두의<br>문제입니다(정춘숙)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6 | 세바시_페미니스트와 사이 좋게 지내는<br>법(손희정)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7 | 세바시_스쿨미투 말하기 시작한 우리는<br>멈출 수 없습니다(오예진)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8 | 세바시_교실 내 혐오, 이대로<br>괜찮을까요(이용석)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9 | 세바시_나다움은 성별이 중요하지<br>않습니다_(장유정)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30 | 불편한 연극_연극하는 사람들이 전하는<br>불편한 장면들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교재        |
| 31 | 성폭력예방교육-OUT! 성폭력                           | (주)러닝뱅크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사이버<br>교육 |
| 32 | 2017 도서벽지 성폭력예방교육<br>강의안(성폭력 없는 우리 동네 만들기)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PPT       |
| 33 | 대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br>PPT(매뉴얼 포함)            | 서울특별시                                    | 대학                    | 2017     | PPT       |
| 34 | 2018년 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br>2.0(공공기관 종사자)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표준<br>강의안 |
| 35 | EBS 평등채널e_은밀한<br>공범들(사이버성폭력)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EBS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36 | EBS 평등채널e_있지만 없다(대학 내<br>성폭력)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EBS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연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37 | 세바시_문단 내 성폭력: 가해자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다(오빛나리)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38 | 세바시_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이은의)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39 | 세바시_성폭력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강요하지 마세요(박하연)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0 | 경찰학교 젠더폭력동아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1 | 국방FM 조갑경의 오늘도 좋은 날_사랑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2 | 국방FM 조갑경의 오늘도 좋은 날_사랑해서 그랬다구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3 | 기습키스 하는 남자=멋진 남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카드뉴스 |
| 44 | 디지털 성범죄(보복성 영상물)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5 | 몰카와 불법촬영의 차이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카드뉴스 |
| 46 | 불법촬영(발카, 모카, 몸캠)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7 | 불법촬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8 | 스토킹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9 | 알쓸평잡_동료라는 이름 뒤에 숨은 젠더폭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연<br>번 | 제<br>목                       | 제<br>작<br>기<br>관              | 교<br>육<br>대<br>상     | 제<br>작<br>년<br>도 | 형<br>식 |
|--------|------------------------------|-------------------------------|----------------------|------------------|--------|
| 50     | 양성평등살롱_SNS 성폭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51     | 여성안심귀가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52     | 온라인 성폭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53     | 우리의 사랑이 남긴 것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카드뉴스   |
| 54     | 클릭하지 마세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카드뉴스   |
| 55     | 통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카드뉴스   |
| 56     | 피해자가 당당하게 거부를 해야한다고?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57     | 사랑을 가장한 범죄, 스토킹(Stalking)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카드뉴스   |
| 58     | 사례로 보는 뉴스미디어와 여성폭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카드뉴스   |
| 59     | 세바시_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반대하기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60     | 아동성폭력,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61     | EBS 평등채널 e_거리의 눈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62     | 세바시_당신은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63     | 세바시_문제는 불평등한 성교육 입니다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연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64 | 세바시_사랑해도 괜찮게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65 | 세바시_아이의 성, 어른이 지켜줘야<br>합니다.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66 | 2016년 전문강사 우수강의안 선정작<br>(교사대상, 활용 가이드 포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PPT  |
| 67 | 2016년 전문강사 우수강의안 선정작<br>(아동대상, 활용 가이드 포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어린이집/<br>유치원          | 2016     | PPT  |
| 68 | STOP 드라마 속 데이트 폭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69 | 데이트 폭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6     | 동영상  |
| 70 | 동민이의 하루_아동 성폭력 예방 가이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웹툰   |
| 71 | 방관자가 아닌 지지자로의 인식전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72 | 성폭력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체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73 | 장난과 폭력의 차이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6     | 동영상  |
| 74 | 폭력예방을 위한 세계의 캠페인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카드뉴스 |
| 75 |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76 | 피해자가 침묵해야 하나요 Part 1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77 | 피해자가 침묵해야 하나요 Part 2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78 | No means No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79 | 군대 성폭력예방교육 동영상<br>「경수의 권리」(병사용)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80 | 군대 성폭력예방교육 동영상<br>「인간의 존엄성」(간부용)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연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81 | 그 선생님이 미쳤나봐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카드뉴스      |
| 82 | 네 기분을 말해봐 : 솔직하게 말해요                | 월드베스트                         | 어린이집/<br>유치원    | 2015     | 도서        |
| 83 | 노출 심한 옷을 입으니 성폭력을<br>당한다고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84 | 니가 참 좋아. 안아도 돼?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카드뉴스      |
| 85 | 대학생 성폭력예방교육 동영상<br>「용기」(학생용)        | 여성가족부                         | 대학              | 2015     | 동영상       |
| 86 | 대학생 성폭력예방교육 동영상<br>「책임」(교수용)        | 여성가족부                         | 대학<br>신교의무<br>자 | 2015     | 동영상       |
| 87 | 더 위, 더 위로 가면 무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카드뉴스      |
| 88 | 따스한 봄!<br>초등학생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날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89 | 사랑해서 때렸습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카드뉴스      |
| 90 | 성범죄자인데 처벌할 수 없다고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카드뉴스      |
| 91 | 성폭력예방교육「Stop! 성폭력」                  | (주)러닝뱅크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사이버<br>교육 |
| 92 | 세바시_내 삶을 바꾼 동티모르에서의 1년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93 | 세바시_편견에 찬 아저씨에서 멋진<br>경찰관으로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94 |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진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95 |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어른들은 왜<br>교육을 받아야 하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96 | 아이의 힐러는 누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연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97  | 아저씨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전<br>어떻하죠?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98  | 재미있는 놀이 : 예의를 지키며 놀아요                                                  | 월드베스트       | 어린이집/<br>유치원   | 2015     | 도서   |
| 99  |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카드뉴스 |
| 100 | 제 어머니는 10대 미혼모였습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101 | 2015전문강사우수강의안<br>「Touch! 스마트폰! Don't Touch!<br>사이버성폭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5     | 교재   |
| 102 | ONLY YES MEANS YES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카드뉴스 |
| 103 | 너를 사랑한 시간, 도대체 사랑이 뭐니?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104 | 데이트 폭력_ Date Violence_영어자막<br>포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105 | 데이트를 망치는 것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106 | 사라지지 않는 권력형 ‘성(性)갑질’,<br>Why?_Power based sexual<br>harassment_영어자막 포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107 |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교원의 관심과<br>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교육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PPT  |
| 108 | 창살_(stop-violence) Bars_영어자막 포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109 | Q&A로 알아 본 성폭력 예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110 | 위험한 아동 길들이기_그루밍(Grooming)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어린이집/<br>유치원   | 2015     | 동영상  |
| 111 | 친밀하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112 | 성폭력 국민의식개선 동영상 「허락」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동영상  |
| 113 | 성폭력피해시대처를위한동화책<br>「해바라기야도와줘」                                           | 여성가족부       | 초중고            | 2014     | 동화   |

| 연<br>번 | 제<br>목                                                 | 제<br>작<br>기<br>관 | 교<br>육<br>대<br>상            | 제<br>작<br>년<br>도 | 형<br>식    |
|--------|--------------------------------------------------------|------------------|-----------------------------|------------------|-----------|
| 114    | 성폭력 피해 시 알아야 할 법의학적 증거 확보 이야기 「은별이를 부탁해」               | 여성가족부            | 초중고                         | 2014             | 웹툰        |
| 115    | 성폭력 피해자, 따뜻한 시선으로 지지해주세요(편견깨기 리플렛 및 포스터)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리플렛       |
| 116    | 수사 및 사법기관의 성폭력 2차 피해 교육용동영상 「공감과 지지」                   | 여성가족부            | 신고의무<br>자<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동영상       |
| 117    | 노인 성폭력 인식개선 동영상 「황혼클리닉 남과 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동영상       |
| 118    | 악몽을 그리다                                                | 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동영상       |
| 119    | 포돌이와 어린이수사대                                            | EBS              | 초중고                         | 2014             | 동영상       |
| 120    | EBS 특별기획 성폭력예방 프로젝트 「너 아니면 나의 이야기」                     | 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동영상       |
| 121    | EBS 특별기획 성폭력예방 프로젝트 「이젠 말해도 괜찮아」                       | 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동영상       |
| 122    | 벨                                                      | 동국대학교            | 대학                          | 2014             | 동영상       |
| 123    | 성폭력 편견깨기 동영상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동영상       |
| 124    | 침묵은 YES가 아닙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동영상       |
| 125    | 2013년도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 공공기관(용)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표준<br>강의안 |
| 126    | 2013년도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 민간기업(용)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표준<br>강의안 |
| 127    | 2013년도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 학부모 및 교사(용)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표준<br>강의안 |
| 128    | 2013년도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행복한 변화, 우리의 힘으로!」- 지역사회지도자(용)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표준<br>강의안 |
| 129    | 노인기 성폭력예방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PPT       |

| 연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130 | 당신에게 던지는 다섯가지<br>질문(활용가이드포함)                      | 여성가족부       | 특수학교<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동영상       |
| 131 | 대학생 성폭력(성희롱)예방교육<br>표준강의안 「품격있는 당신의 바른 캠퍼스<br>생활」 | 여성가족부       | 대학                     | 2013     | 표준<br>강의안 |
| 132 | 대학생용 성폭력예방교육 동영상<br>「대학생의성스러운수다」                  | 여성가족부       | 대학                     | 2013     | 동영상       |
| 133 | 성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10계명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리플렛       |
| 134 | 청소년기 성폭력예방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PPT       |
| 135 |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br>켄우드교수종합편                        | 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동영상       |
| 136 | 미녀와 야수                                            | 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동영상       |
| 137 |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사이버<br>교육 |
| 138 | 성폭력예방 홍보 포스터<br>「성폭력예방가이드」(유아, 초등저학년용)            | 여성가족부, 교육부  | 신고의무자<br>초중고           | 2013     | 리플렛       |
| 139 | 성폭력예방 홍보 포스터<br>「성폭력예방가이드」(중고등생용)                 | 여성가족부, 교육부  | 신고의무자<br>초중고           | 2013     | 리플렛       |
| 140 | 성폭력예방 홍보 포스터<br>「성폭력예방가이드」(초등고학년용)                | 여성가족부, 교육부  | 신고의무자<br>초중고           | 2013     | 리플렛       |
| 141 | 우리사회의 성문화특성과 성폭력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사이버<br>교육 |
| 142 | 성폭력 예방의 이해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사이버<br>교육 |
| 143 | 췌! 비밀이야                                           | 여성가족부,탁틴내일  | 특수학교<br>초중고            | 2013     | 동영상       |
| 144 | 왕 게임                                              | 여성가족부&탁틴내일  | 특수학교<br>초중고            | 2013     | 동영상       |

## □ 성희롱(총 43종)

| 연도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1  | 세바시_유머라도 상처를 주면 안됩니다(황영진)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세상을바꾸는시간15분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  | 비정규직·신입직원·인턴 폭력예방교육<br>토론사례집 <이제는 알아야 할 직장 내<br>성희롱 사례 20>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교재        |
| 3  | 부장님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4  | 친구끼리 '장난'이니까 괜찮다고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카드뉴스      |
| 5  | 직장 동료들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대응<br>매뉴얼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 고용노동부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7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행복한 일터를<br>만드는 첫걸음입니다.                      | 고용노동부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리플렛       |
| 8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 고용노동부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리플렛       |
| 9  | 성희롱예방교육-남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 (주)러닝뱅크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사이버<br>교육 |
| 10 | EBS 평등채널e_ 이상한 범죄<br>(성희롱 2차 피해)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11 | 나는 한국에서 남성으로 살아간다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닷컴페이스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12 | 세바시_성희롱 단톡방 사건의 피해자로서<br>내가 느낀 것(김예은)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13 |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사회 만들기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리플렛       |



| 연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14 | 눈치사회, 은밀한 직장 괴롭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카드뉴스      |
| 15 | 성희롱예방교육-들리지 않는 이야기                             | 러닝뱅크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사이버<br>교육 |
| 1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 고용노동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교재        |
| 17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꼭 필요한 이유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18 | 2016년 성희롱예방교육 표준강의안(2.0)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표준<br>강의안 |
| 19 | 2016년 전문강사 우수강의안 선정작<br>(군인(초급간부)대상, 활용가이드 포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PPT       |
| 2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한<br>이유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21 | 성희롱 방지 인포그래픽<br>「밝은직장, 존중과배려로함께만들어요」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리플렛       |
| 22 | 성희롱 방지 인포그래픽<br>「성희롱피해! 보호받을권리가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리플렛       |
| 23 |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존중」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4 | Live Fresh, Love Fresh                         | 동국대학교                 | 대학                   | 2015     | 교재        |
| 25 | 성희롱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서울특별시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교재        |
| 26 | 성희롱 예방교육 「K상사 이야기」                             | (주)러닝뱅크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사이버<br>교육 |
| 27 | 당신의 직장은 안녕하신가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8 | 성희롱 참지 마세요                                     | 고용노동연수원<br>청소년고용노동교육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9 | 영화 속 사건들로 본 성희롱예방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30 | 매너손vs못된손, 손의 정체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연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31 |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The First Steps towards a Happy Working Environment | 고용노동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리플렛       |
| 32 | 군대 내 성희롱예방 영상                                                                       | 국가인권위원회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동영상       |
| 33 | 성희롱예방교육                                                                             | 국가인권위원회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사이버<br>교육 |
| 34 | 성희롱 성폭력 예방 가이드북<br>「잘알수록서로를더잘지킬수있어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대학             | 2014     | 교재        |
| 35 | 성희롱예방교육 「서로가 몰랐던 이야기」                                                               | (주)러닝뱅크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사이버<br>교육 |
| 36 | 사업주를위한직장내성희롱예방가이드북<br>-직장내성희롱~마음폭행복쑈                                                | 고용노동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교재        |
| 37 | 모두가 알아야 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br>직장내성희롱(활용가이드포함)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표준<br>강의안 |
| 38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다국어 리플릿」<br>(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br>우즈베키스탄)                           | 고용노동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리플렛       |
| 39 | 성희롱 없는 공직문화 만들기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사이버<br>교육 |
| 40 |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 만들기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리플렛       |
| 41 | 사례로 풀어보는 성희롱예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사이버<br>교육 |
| 42 | 성희롱예방! 3가지 질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사이버<br>교육 |
| 43 | 성희롱예방교육 「직장in의 조건」                                                                  | (주)러닝뱅크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사이버<br>교육 |

## □ 성매매(총 36종)

| 연도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1  | 성매매예방교육-OUT! 성매매                           | (주)러닝뱅크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사이버<br>교육 |
| 2  | 2018년 성매매예방교육 표준강의안<br>2.0(공공기관 종사자)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표준<br>강의안 |
| 3  | EBS 평등채널e_ 숨은 문제 찾기<br>(청소년 성매매)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EBS | 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  | 세바시_성매매, 얹힌 매듭을 푸는 법<br>(정미례)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5  | 어린이 사이다 배틀_성상품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7     | 동영상       |
| 6  | 어린이 사이다 배틀_음란물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7     | 동영상       |
| 7  | 청소년 성범죄의 온상, 랜덤채팅 앱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7     | 카드뉴스      |
| 8  | 난민의 또 다른 위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카드뉴스      |
| 9  | EBS 평등채널e_진정한 남자라면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10 | 비긴어게인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웹툰        |
| 11 | 좋은 사람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br>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무빙툰       |
| 12 | 남학생 대상 성매매예방교육 PPT<br>(강사교육용)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6     | PPT       |
| 13 | 성매매예방교육 동영상(뮤직비디오)_<br>Think about it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6     | 동영상       |
| 14 | 성범죄 피해 청소년 대상 성매매예방교육<br>PPT(강사교육용)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6     | PPT       |
| 15 | 여학생 대상 성매매예방교육<br>PPT(강사교육용)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6     | PPT       |
| 16 | 주변인 대상 청소년 성범죄예방교육<br>“네 편이 되어줄게”(사법기관종사자)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6     | 교재        |
| 17 | 주변인 대상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br>“네 편이 되어줄게”(신고의무자)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6     | 교재        |
| 18 | 주변인 대상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br>“네 편이 되어줄게”(학부모용)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6     | 교재        |

| 연<br>번 | 제 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19     | 성매매, 인신매매! 과연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0     | 성매매예방교육 「Stop! 성매매」                                     | (주)러닝뱅크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사이버<br>교육 |
| 21     | 세바시_성 상품사회에서 더 만족스러운 선택하기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2     | 내 사진, 동영상을 보내 달라구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카드뉴스      |
| 23     | 블랙홀 속의 성매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4     | 성매매,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5     |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6     |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폭력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카드뉴스      |
| 27     | 성매매 예방교육 국민의식개선홍보동영상 「공감」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동영상       |
| 28     | 2013년 성매매 방지 영상작품 「클릭」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동영상       |
| 29     | 2013년도 성매매방지 홍보 동영상 「성매매, 그들의일상이무엇을만드는가」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동영상       |
| 30     | 2013년도 성매매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성매매편견깨기」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표준<br>강의안 |
| 31     | 2013년도 청소년<br>성매매예방전국공동캠페인 리플릿<br>「청소년이행복한세상! 우리함께만들어요」 | 여성가족부                         | 초중고            | 2013     | 리플렛       |
| 32     | 청소년 성매수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 여성가족부                         | 초중고            | 2013     | 만화        |
| 33     | 성매매 방지의 필요성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사이버<br>교육 |
| 34     | 별별질문 - 성매매에 대한 20가지 이야기                                 | 성매매피해지원 상담소<br>이름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교재        |
| 35     | 성매매 방지, 왜 필요한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사이버<br>교육 |
| 36     | 성매매예방교육 「Click 성매매 바로보기」                                | (주)러닝뱅크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사이버<br>교육 |

## □ 가정폭력(총 52종)

| 연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1  | 가정폭력예방교육-OUT! 가정폭력                                 | (주)리닝뱅크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사이버<br>교육 |
| 2  | 2017 도서벽지 가정폭력예방교육 강의안<br>(가정폭력 없는 평등하고 화목한 우리 마을)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PPT       |
| 3  | EBS 평등채널e_보내지 못한 답장<br>(다문화 가정폭력)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  | EBS 평등채널e_어떤 징후(스토킹)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5  | 데이트폭력을 1인칭 시점에서 겪는다면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닷컴페이스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6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하는<br>아동학대 예방요령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의무자<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7  | 가정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지침서                                 | 리닝뱅크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사이버<br>교육 |
| 8  |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의무자<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9  |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의무자<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10 | EBS평등채널e_3명 중의 1명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11 | EBS평등채널e_누구나 알지만 누구도<br>모르는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12 | EBS평등채널e_민감한 목격자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13 | 2016년 가정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2.0)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표준<br>강의안 |
| 14 | 가정사가 아닌 범죄행위, 가정폭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카드뉴스      |
| 15 | 가정폭력 1부_‘왜 맞았어?’라고 묻지<br>마세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연<br>번 | 제<br>목                             | 제<br>작<br>기<br>관 | 교<br>육<br>대<br>상               | 제<br>작<br>년<br>도 | 형<br>식    |
|--------|------------------------------------|------------------|--------------------------------|------------------|-----------|
| 16     | 가정폭력 2부_집 밖에서 범죄이면,<br>집안에서도 범죄입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17     |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깨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18     | 사랑이라는 이유로                          | 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19     | Blue House                         | 성남여성의전화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0     | SoWhat                             | 성남여성의전화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1     | 가정폭력예방교육 「Stop! 가정폭력」              | (주)러닝뱅크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사이버<br>교육 |
| 22     |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일까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3     |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br>방법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4     |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어린이집/<br>유치원<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5     | 갈 길이 멀다                            | 성남여성의전화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6     | 사랑의 매는 없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7     | 아동학대 특례법 1주년,<br>그리고 두 살아이의 비극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카드뉴스      |
| 28     | 왜 때려                               | 성남여성의전화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29     | 자녀에게 어떤 미래를 선물하시겠습니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30     | 폭력을 멈추는 가장 쉬운 방법, Don't skip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31     | 폭력의 이면                             | 성남여성의전화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32     | 가정폭력은 범죄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33     |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34     | 달콤살벌 가족 우리 가족이 달라졌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연<br>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35     | 달콤살벌 부부 우리 부부가 변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36     | 우리부부가 변했다, 우리가족이 변했다_영어자막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37     | 훈육vs학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38     | 가정폭력 자기인식점검<br>「가정폭력인권의식교육」-법원·검찰직무용                 | 여성가족부       | 신고의무자<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교재        |
| 39     | 멍다이어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40     | 여성은 43세, 남성은 30세? 이들의 관계는?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41     | 가정폭력 국민의식 개선 동영상 「관심」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동영상       |
| 42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리플렛<br>「가정폭력 예방은 당신의 작은관심에서<br>시작됩니다」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리플렛       |
| 43     | 가정폭력예방 홍보 국정만화<br>「가정폭력피해이렇게도움받으세요」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만화        |
| 44     |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사이버<br>교육 |
| 45     | 가정폭력예방교육 - 「No More! 가정폭력!」                          | (주)러닝뱅크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사이버<br>교육 |
| 46     | 가족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동영상       |
| 47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할<br>아동학대 예방요령                     | 보건복지부       | 신고의무자<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PPT       |
| 48     | 2013년도 가정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br>「NoMore!가정폭력!」-공공기관(용)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표준<br>강의안 |
| 49     | 2013년도 가정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br>「NoMore!가정폭력!」-교사및청소년지도자(용) | 여성가족부       | 신고의무자<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표준<br>강의안 |
| 50     | 2013년도가정폭력예방교육표준강의안<br>「NoMore!가정폭력!」-일반국민(용)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표준<br>강의안 |
| 51     | 가정폭력 예방교육 홍보 동영상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동영상       |
| 52     | 가정폭력예방, 왜 중요한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사이버<br>교육 |

## □ 통합교육(총 97종)

| 연도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1  | 세바시_사랑이 넘치는 곳에 불평등이<br>있습니다(오찬호)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세상을바꾸는시간15분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  | 세바시_성폭력 피해자, 지금에서야 말하는<br>이유(금태섭)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세상을바꾸는시간15분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3  | 세바시_성폭력은 나쁜 남자 문제가<br>아닙니다(이나영)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세상을바꾸는시간15분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4  | 2018년 상반기 폭력예방 특집(세바시)<br>“with you” 스토리북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br>교육진흥원, 세상을바꾸는<br>시간15분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교재  |
| 5  | 판결의온도_21세기형 범죄<br>“디지털 성범죄”의 모든 것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MBC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6  | 성평등 모두에게 즐거운 상상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7  | 불법촬영,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8  | 불법촬영,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9  | 불법촬영, 현장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10 | 여성양육자의 여성혐오 1편_<br>엄마가 여성혐오를 한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11 | 여성양육자의 여성혐오 2편_<br>69년생 엄마, 92년생 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12 | 여성양육자의 여성혐오 3편_성평등한<br>가족을 위해 함께 공부하는 엄마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13 | 성평등, 모두에게 즐거운 상상 리플렛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리플렛 |
| 14 | 한국에서 ‘여성’ 과학자로 산다는 것                      | 프란                                      | 대학<br>초중고      | 2018     | 동영상 |
| 15 | 페미니즘 공부하는 남자들 만나봤다                        | 프란                                      | 대학<br>초중고      | 2018     | 동영상 |
| 16 | 케이트블란쳇이 화난 이유                             | 스브스뉴스                                   | 대학<br>초중고      | 2018     | 동영상 |



| 연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17 | 여성게임유저가겪는일(feat. 오버워치)                      | 씨리얼            | 대학<br>초중고            | 2018     | 동영상       |
| 18 | 올어바웃일상속‘여성혐오’                               | 씨리얼            | 대학<br>초중고            | 2018     | 동영상       |
| 19 | 2018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학생)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대학                   | 2018     | 사이버<br>교육 |
| 20 | 2018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교직원)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대학                   | 2018     | 사이버<br>교육 |
| 21 | 세바시_사랑이 오래가는 비밀(윤홍균)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2 | 세바시_경단녀와 취준생이 빵집을<br>차린이유(김나연 장예원)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3 | 세바시_엄마 남자는 엄마 남자 내 남자는<br>내 남자(김지운)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4 | 세바시_일의 스트레스를 다스리는<br>기술(김병수)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5 | 세바시_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br>모두의 책임입니다(박준성)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6 | 세바시_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br>지키려면(이수정)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7 | 세바시_완전한 사랑을 위해 알아야 할<br>것들(류지원)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8 | 세바시_성관계와 인간관계의 본질은<br>같습니다(손경이)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29 | 세바시_당신이 옳다(정혜신)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30 | 세바시_힘이 약한 사람에게 건강한<br>방식으로 힘을 행사하는 말하기(박재연)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동영상       |

| 연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31 | 2018년 하반기 폭력예방 특집<br>(세바시 “스쿨 미투” 스토리북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세상을바꾸는시간15분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8     | 교재        |
| 32 | 2017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br>교육(교직원용)                    | 서울대 인권센터                              | 대학                   | 2017     | 사이버<br>교육 |
| 33 | 2017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br>(대학생용)                   | 서울대 인권센터                              | 대학                   | 2017     | 사이버<br>교육 |
| 34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리플렛<br>(다국어버전-한국어,영문,중문)           | 한양대학교                                 | 대학                   | 2017     | 리플렛       |
| 35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자료(동영상)                             | 한양대학교                                 | 대학                   | 2017     | 동영상       |
| 36 | 대학교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방통대         | 대학                   | 2017     | 동영상       |
| 37 | 대학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br>콘텐츠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방통대         | 대학                   | 2017     | 동영상       |
| 38 | 2017년 하반기 폭력예방 특집(세바시)<br>‘비폭력과 공감의 길을 찾아서’ 스토리북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교재        |
| 39 | YES or NO 입장정리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닷컴페이스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0 | YES or No 입장정리_Feat. 사회생활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닷컴페이스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1 | 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PPT       |
| 42 | 세바시_무관심은 어떻게 혐오와 폭력이<br>되는가?(은유)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3 | 세바시_비폭력의 길, 휴머니즘의 경계<br>(우석훈)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4 | 세바시_성적욕구를 표현하는 서로 좋은<br>방법(양동옥)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5 | 세바시_오래 행복하려면 평등한 연애를<br>하세요(신연정)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연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46 | 세바시_차별은 비용을 치른다(손아람)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7 | 세바시_폭력에 대처하려면 연습이<br>필요합니다(최하란)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8 | 세바시_혐오표현은 어떻게 사회를<br>파괴하는가(홍성수)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49 | 신비한 칭찬사전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스브스뉴스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50 | 이지혜 게임-일상에서 폭력을 마주하다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스브스뉴스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51 | 제 4회 올해의 강의<br>'비폭력과 공감의 길을 찾아서' 스토리북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교재        |
| 52 | 청소년이 하루에 40번씩 듣는 욕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닷컴페이스 | 초중고<br>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53 | 폭력예방교육 토론 사례집(교구포함)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교재        |
| 54 | 해외콘텐츠_어린이를 위한 '동의' (Consent<br>for Kids)_한글자막, 더빙판 포함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어린이집/<br>유치원초<br>중고         | 2017     | 동영상       |
| 55 | 해외콘텐츠_제임스가 죽었다 (James is<br>Dead)_한글자막 포함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56 | 82년생 김지영 구하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57 | 공감과 존중, 폭력예방교육(공공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사이버<br>교육 |
| 58 | 공감과 존중, 폭력예방교육(대학)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                          | 2017     | 사이버<br>교육 |
| 59 | 공감과 존중, 폭력예방교육(학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초중고                         | 2017     | 사이버<br>교육 |

| 연<br>번 | 제<br>목                         | 제<br>작<br>기<br>관              | 교<br>육<br>대<br>상     | 제<br>작<br>년<br>도 | 형<br>식    |
|--------|--------------------------------|-------------------------------|----------------------|------------------|-----------|
| 60     | 성인지 감수성 남성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61     | 오버워치참교육,여자랑무슨상관인데?             | 프란                            | 대학<br>초중고            | 2017             | 동영상       |
| 62     | 오버워치 유저가 여성일 때 생기는 일           | 프란                            | 대학                   | 2017             | 동영상       |
| 63     | 세바시_서로 인정하는 순간 생기는 놀라운 변화(박지웅)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64     | 세바시_내 마음이 지옥일 때(이명수)           |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대학<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7             | 동영상       |
| 65     | EBS평등채널_e_전염병을 막는 방법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66     | 성희롱 예방, 어~~렵지 않아요              |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                  | 대학                   | 2016             | 리플렛       |
| 67     | 세바시_기생충으로 본 남녀관계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68     | 세바시_소녀에서 엄마로 살기까지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69     | 세바시_아내는 제게 늘 걱정거리입니다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70     | 세바시_엄마사람으로 용기있게 사는 법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71     | 세바시_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72     | 세바시_독일인이 이야기하는 한국의 양성평등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73     | 세바시_젊은세대의양성혐오를읽는몇가지 코드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동영상       |
| 74     | 건강한 세상을 위한<br>폭력예방교육(공공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사이버<br>교육 |

| 연<br>번 | 제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75     | 건강한 세상을 위한 폭력예방교육(학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사이버<br>교육 |
| 76     | 건강한 세상을 위한 폭력예방교육(대학)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학             | 2016     | 사이버<br>교육 |
| 77     | 제3회 올해의 강의<br>'비폭력과 공감의 길을 찾아서' 스토리북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교재        |
| 78     | 2016년 장애 성 인권 교육 매뉴얼 모음집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특수학교           | 2016     | 교재        |
| 79     | 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6     | 사이버<br>교육 |
| 80     | EBS 평등채널e_ 인간이라는이유로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81     | EBS<br>평등채널e_누구라도침묵하게해서는안된다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E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82     | 세바시_큰 물에서 놀아봐야 진짜 나를<br>만난다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83     | 세바시_폭력적인 시선에 굴하지 않고<br>괜찮은 여자로 사는법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84     | 세바시_품위있는삶을가로막는것들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동영상       |
| 85     | 함께 만드는 사회-성폭력예방(공공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사이버<br>교육 |
| 86     | 함께 만드는 사회-성폭력예방(학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사이버<br>교육 |
| 87     | 제2회 올해의 강의의 '여성, 평화를 말하다'<br>스토리북    | 여성가족부,<b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br>CBS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5     | 교재        |
| 88     |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의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사이버<br>교육 |
| 89     | 세상을 바꾸는 생각 그리고 행동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동영상       |

| 연<br>번 | 제 목                                                              | 제작기관  | 교육대상                   | 제작<br>년도 | 형식        |
|--------|------------------------------------------------------------------|-------|------------------------|----------|-----------|
| 90     | 세상을 바꾸는 생각 그리고 행동(PPT)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4     | 표준강의<br>안 |
| 91     | 2013년도 통합 예방교육 표준강의안<br>「폭력예방의통합적이해」(총론+각론-성폭<br>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표준강의<br>안 |
| 92     | 장애·비장애 통합학급 성교육을 위한<br>교사용지도서<br>「함께 어울리는 탁 트인세상」                | 여성가족부 | 특수학교<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교재        |
| 93     | 장애·비장애 통합학급 성교육을 위한<br>부모, 교사지침서<br>「함께 어울리는 탁 트인세상」             | 여성가족부 | 특수학교<br>공공기관<br>(일반국민) | 2013     | 교재        |
| 94     | 장애인 성 인권 교육 매뉴얼-지적장애,<br>시각장애, 청각장애<br>(경도장애학생을중심으로)             | 여성가족부 | 특수학교                   | 2013     | 교재        |
| 95     | 장애인 성 인권 교육 매뉴얼-지적장애,<br>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br>(중복장애학생을중심으로)       | 여성가족부 | 특수학교                   | 2013     | 교재        |
| 96     |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성교육 워크북<br>「함께어울리는탁트인세상」                            | 여성가족부 | 초중고                    | 2013     | 교재        |
| 97     |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핸드북<br>(학습·교수안포함)                                   | 여성가족부 | 초중고                    | 2013     | 교재        |

☞ 여성가족부 '교육정보' 홈페이지([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3](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3)) 추천콘텐츠 자료  
다운로드 가능



##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

2019년 2월 인 쇄  
2019년 2월 발 행

발 행 인 : 진 선 미  
발 행 처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442~6446  
FAX / 02-2100-6484

인 쇄 처 : 중앙기획·인쇄  
전화 / 02-736-2866~7, 02-737-161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616-10